

자료 09-02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의 향상에 관한 정책토론회

#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의 향상 방안

2009. 6



사단  
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

kipf 한국조세연구원

## 개 요

- 주 제 :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의 향상 방안
- 일 시 : 2009년 6월 29일(월) 14:00~18: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실
- 진행순서

### 14:00~14:15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경대 교수)  
인사말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축 사 이용섭 국회의원  
축 사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건국대 명예교수)

### 14:15~15:45 [제1부] 바람직한 세제 개선방안

사회자 송쌍종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 [제1주제] 부가가치세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자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자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전문연구원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 [제2주제] 납세의식 분석과 정책방향

발표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심태섭 단국대 상경대학 교수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16:00~17:45 [제2부] 바람직한 세제와 납세자권의 향상 방안

사회자 최 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발표자 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고문  
토론자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오제세 국회의원  
유일호 국회의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가나다순)

17:45~18: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8:00 폐회

# 총 목 차

## ■ 제1 주제

부가가치세제도 선진화 방안

## ■ 제2 주제

납세의식 분석과 정책방향

제1주제

# 부가가치세제도 선진화 방안

2009. 6

김유찬 교수(홍익대)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

이성식 박사(세무사)

이선성(세무사)

## I. 서론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전체 국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많은 재정수요의 증가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조세체계의 효율성 증진과 안정적 세수확보 차원에서 그 역할이 지금처럼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부가가치세제 선진화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제도 개선, 기타 부가가치 관련 세무행정 문제를 중심으로 이들 주요 정책현안 이슈들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간편한 방법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킨다거나 면세제도처럼 소비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장치로서 구상된 제도가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의 기장능력이나 세무관리능력을 고려하여 납세순응비용과 징세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특례제도로서 간이과세제도와 소액부징수제도 그리고 예정신고납부의무의 배제제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조세부담의 불공평과 탈세의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존폐여부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그리고 소액부징수제도에 대해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무시하고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또한 그 적용기준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선진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특례제도인 간이과세제도와 소액부징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제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순응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와 운영현황

### 1.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와 운영현황

#### 가. 간이과세제도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1977년에는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수익세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두었다. 그 대상은 직전연도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300만원, 기타의 경우에는 1,2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3.5%, 기타의 경우에는 2%로 하였다.<sup>1)</sup>

그 이후 1978년부터는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광업·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1979년 2월 13일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급대가를 대리업 등의 경우에는 600만원, 기타의 사업의 경우에는 2,400만원으로 당해 금액을 두 배로 증액하였다. 또한 1988년 6월 9일에는 900만원 및 3,600만원으로, 그리고 1995년 12월 30일에는 1,200만원 및 4,8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1995년 12월 29일에는 한계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sup>2)</sup>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연도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간이과세제도가 신설되었다.

1) 이러한 과세특례제도의 채택 이유에 대해 세제당국은 "부가가치세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장부의 기장·비치, 신고·납부 등이 전제되어야 하나 일정 수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제의 적용이 어렵고, 또한 이들에 대한 세무행정상의 효과적인 관리가 곤란하므로 이들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세무당국의 행정비용을 완화 내지 제거하기 위해 이들을 정규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재무부, 1990, 부가가치세법 해설, pp. 201~202).

2) 재정경제원, 『간추린 개정세법』, 1996, p. 312.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이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13%에서 50%까지 11종류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제도가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로 이원화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1999년 12월 28일부터는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를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기장능력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다음 각 호와 같이 3종류로 단순화하여 이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과세특례제도는 폐지하였다.

1.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100분의 20
2.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이에 따라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를 종전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자로 하고 그 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간이과세제도로 일원화되었다. 이러한 개정이유에 대해 행정당국은 “세금계산서 수수에 기초한 근거과세체제의 확립과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의한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의 과세형평 실현”이라고 밝히고 있다.<sup>3)4)</sup>

2003년 12월 30일에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던 것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였다(법 §25① I).<sup>5)</sup>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장(간이과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

3) 재정경제부, 『간추린 개정세법』, 2000, p. 329.

4) 그러나 이러한 간이과세제도는 비록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과세특례자의 경우와는 달리 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10%)」은 과세특례자의 경우의 세율과 동일한 것이 되고 간이과세자의 적용대상은 종전 과세특례자의 적용기준과 같게 되어 결국 세율을 종전 2% 및 3.5%의 2종류에서 2%, 3% 및 4%의 3종류로 세분하여 적용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5) 이는 간이과세제도가 세금계산서의 수수, 장부의 기장·비치 및 납부세액의 계산과 신고서의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특례제도로써 이미 다른 사업장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일반과세자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 할 것이다.

을 두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은 다음의 경우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제외),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 등 개인사업서비스업

또한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별로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2호,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8호).<sup>6)</sup>

#### 나. 제도운영 현황

아래 <표 1>은 연도별 납세자별 인원 현황을 나타낸다. 간이과세자 인원의 증·감

6) 간이과세배제의 개별기준으로서 종목기준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기준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제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요구르트·화장품·청량음료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종목기준 등 해당 기준을 적용하며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이를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46.5%에서 41.8%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05년부터 38%대로 낮아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활성화로 인해 과세표준 양성화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직도 간이과세자는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납세자의 거의 40% 수준에 육박한다는 것은 아직 근거과세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1> 연도별 납세자별 인원 현황

구분	인원(명), 비율(%)					
	2002		2003		2004	
법인	345,292	8.7	359,154	9	372,041	9.4
개인 일반	1,774,268	44.8	1,861,707	46.6	1,924,877	48.8
간이과세자	1,843,894	46.5	1,773,804	44.4	1,645,329	41.8
합계	3,963,454	100	3,994,663	100	3,942,247	100

구분	인원(명), 비율(%)					
	2005		2006		2007	
법인	400,398	9.7	420,154	9.9	456,019	9.9
개인 일반	2,117,551	51.4	2,216,802	52	2,385,687	51.8
간이과세자	1,603,663	38.9	1,623,990	38.1	1,759,828	38.3
합계	4,121,612	100	4,260,946	100	4,601,534	100

주: 과세기간별, 지방국세청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음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3~2008

아래 <표 2>는 연도별 납세자별 과세표준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 과세표준 중에서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에 1.6%, 2003년에 1.3%를 나타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1%로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 연도별 납세자별 과세표준 현황

구분	과세표준(억원), 비율(%)					
	2002		2003		2004	
법인	1,415,955,000	82.1	1,556,524,300	82.7	1,781,275,200	83.7
개인 일반	282,436,900	16.4	300,867,700	16	322,827,300	15.2
간이과세자	27,110,200	1.6	25,276,600	1.3	23,983,200	1.1
합계	1,725,502,100	100	1,882,668,600	100	2,128,085,700	100

구분	과세표준(억원), 비율(%)					
	2005		2006		2007	
법인	1,857,581,843	83.4	2,014,507,451	83.2	2,231,780,418	83.3
개인 일반	345,936,662	15.5	380,008,387	15.7	418,522,356	15.6
간이과세자	24,139,823	1.1	26,203,854	1.1	29,563,470	1.1
합계	2,227,658,328	100	2,420,719,692	100	2,679,866,244	100

주: 과세기간별, 지방국세청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음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3~2008

아래 <표 3>은 연도별 납세자별 납부세액 현황을 나타낸다. 전체 납부세액 중에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도별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에 3.9%, 2003년에 8.3%, 2004년에 5.1%를 나타냈으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3.0%, 2.7%, 2.8%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연도별 납세자별 납부세액 현황

구분	납부세액(백만원), 비율(%)					
	2002		2003		2004	
법인	10,742,571	60.4	1,095,749	12.6	6,169,723	41.4
개인 일반	6,343,845	35.7	6,908,270	79.1	7,954,290	53.4
간이과세자	694,838	3.9	726,315	8.3	762,157	5.1
합계	17,781,254	100	8,730,334	100	14,886,170	100

구분	납부세액(백만원), 비율(%)					
	2005		2006		2007	
법인	6,223,874	40.5	5,204,036	33.2	4,335,568	26.8
개인 일반	8,678,024	56.5	10,051,030	64.1	11,377,681	70.4
간이과세자	456,129	3.0	415,604	2.7	451,566	2.8
합계	15,358,027	100	15,670,670	100	16,164,815	100

주: 과세기간별, 지방국세청별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음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3~2008

## 2. 우리나라의 소액부징수제도(납부의무 면제제도)와 운영현황

### 가. 소액부징수제도(납부의무 면제제도)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처음으로 시행한 1977년부터 1999년 12월까지 연도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아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00년부터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표 4>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의 연도별 변화

연도	기준금액
1977년	7,500원
1978년 ~ 1988년	10,000원
1989년	20,000원
1990년 ~ 1993년	40,000원
1994년	60,000원
1995년	120,000원
1996년 ~ 1999년	240,000원

출처: 이성식, 2005,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월드택스연구회 발표논문집』 p. 7에서 재인용

### 나. 제도 운영 현황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1기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총인원 1,722,863명 중 소액부징수자(납부의무 면제자)는 1,288,202명으로 면제 비율은 74.8%나 된다. 그리고 2007년 2기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총인원 1,759,828명 중 소액부징수자(납부의무 면제자)는 1,306,627명으로 면제 비율은 74.2%나 된다. 이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소액부징수자 비중이 40%대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비중이다.

<표 5> 총과세인원 대비 소액부징수자(납부의무 면제인원)의 비중

(2007년 1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합계
총과세인원	2,312,531	1,722,863	4,035,394
소액부징수자(납부의무 면제인원)	1,107,763	1,288,202	2,395,965
소액부징수자 비율(%)	47.9	74.8	59.3

(2007년 2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합계
총과세인원	2,385,687	1,759,828	4,145,515
소액부징수자(납부의무 면제인원)	1,095,151	1,306,627	2,401,778
소액부징수자 비율(%)	45.9	74.2	57.9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8

### III.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제적 효과

#### 1.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취지

개인 또는 가족 단위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세법에 관한 지식과 납세준용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장부의 기장·비치 및 더 나아가 납부세액의 계산과 신고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조세수입에도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상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무행정상의 관리를 하는 것은 징세비용도 많이 소요되지만 어느 면에서는 행정력의 낭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들을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보다 간편한 방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해 세액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준용비용을 줄여 부가가치세제의 적용을 보다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sup>78)</sup>

7) David Williams, *Value Added Tax, Tax law design and drafting*, Kluwer Law International, Netherlands, 2000, pp. 177~178; 최명근·나성길, *부가가치세법론*, 2004, p. 522; 재무부, 1990, *한국부가가치세제사*, pp. 201~201.

8) 이러한 이유로 EU 제2차 지침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어렵고 기장능력도 없는 소규모 사업자와 농·어민에 대해 각국의 특수사정과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EU 제2차 지침 §14), 제6차 지침에서는 표준율방식에 의한 간

## 2. 소액부징수제도의 도입취지

소액부징수제도는 한 과세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또는 납부할 세액이 일정액 이하인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아예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를 시행하지 않던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제를 새로 도입하여 소비세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수가 크게 증가되어 행정비용이 과중해지면서도 이들의 세수기여도가 작은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sup>9)</sup> 그러나 납부세액의 면제는 당해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추가하여 받은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자의 수입으로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정부가 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어 이에 따라 과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및 조세중립성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주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납세사무 처리능력이나 징세비용 측면을 고려하면 일정한 수준의 납부의무의 면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EU위원회에서는 납부의무의 면제대상을 공급대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세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다.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제안한 유럽의회 수정안에서는 소규모 사업자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의무의 면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의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연간 공급대가보다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EU위원회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계산이 쉽고 세무당국도 조사가 용이하다는 실무상의 편의를 중시하여 납부의무의 면제대상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sup>10)</sup>

## 3.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제적 효과

---

이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나 이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EU 제6차 지침 §24(1)).

9) 재무부, 앞의 책, 1990, p. 202.

10) 납부세액의 면제대상을 공급대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업종에 따라 과세매입이 많은 사업자와 적은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에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면세사업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과세매입이 없거나 적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의 수중에 남게 되는 것에 비해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와 같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입액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수중에 남게 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작게 된다(B.J.Terra and Advokat Juliet Kajus, *A Guide to the Sixth VAT Directive*, IBFD, 1991, p. 25).

먼저 간이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긍정적 효과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되고, 과세당국의 징세비용이 감축된다. 반면 부정적 효과는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단계에 머물러 조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작게 부담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며, 일반사업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이 문제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업종별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된다.

둘째, 소액부징수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긍정적 효과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되고, 과세당국의 징세비용이 감축된다. 반면 부정적 효과는 사업자들이 소액부징수 단계에 머물러 조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작게 부담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며, 소비자에게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소액부징수기준을 설정함으로 인해 업종별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상의 논의는 아래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간이과세제도	소액부징수제도
긍정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 감축</li> <li>- 과세당국의 징세비용 감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 감축</li> <li>- 과세당국의 징세비용 감축</li> </ul>
부정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단계에 머물러서 조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작게 부담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저해</li> <li>- 일반사업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 문제</li> <li>-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단순 구조로 인해 업종별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들이 소액부징수 단계에 머물러서 조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작게 부담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저해</li> <li>- 소비자에게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문제</li> <li>-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기준을 설정함으로 인해 업종별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li> </ul>

## IV. 주요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OECD 가입국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조치는 대개 다음과 같은 3종류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sup>11)</sup>

### 1. 소액부징수

이에는 아예 사업자등록의무를 배제하여 납세의무자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국가도 있다.

### 2. 납세사무의 간소화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신고·납부의 횟수를 줄이거나 세액계산을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추계베이스 내지 매입·매출의 일정률과 같은 의제베이스(proxy)에 의해 간이세액계산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간이과세, 협의과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3. 특정 사업자에 대한 세액의 일부 면제

이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제되는 세액이 정해지는 것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제되는 세액이 정해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시행하던 한계세액공제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1호의 제도만 시행하거나 우리나라와 같이 제1호 및 제2호의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3호의 방법에 의한 특례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1. 간이과세

### 가. EU의 지침

EU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6차 지침에서는 표준율방식에 의한 간이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나, 이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EU 제6차 지침 §24(1)).

EU의 제6차 지침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거래, 과세거래의 장소, 납세의무의 성립, 과세표준, 세율, 면세, 전단계세액공제, 조세채무자와 그의 의무 등 전반적인 내용

11) OECD, *Taxing Consumption*, OECD, 1988, pp. 148~150.

을 규정하고 있는데, EU 국가들 내에서 이 지침은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규정보다 우위에 있으며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부가가치세 규정들을 제6차 지침의 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반영해야 한다.

이 제6차 지침의 제24조 제1항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거래활동 또는 구조에 있어서 통상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가맹국은 제29조에서 정한 협의(EU 부가가치세위원회와의 협의)에 의해 정한 조건 및 제약하에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표준율방식과 같은 간소화절차를 채용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간소화절차를 채용하면서 개별 납세자들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영국

영국은 EU 제6차 지침에 따라 연간 공급대가가 일정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의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만을 두었다(Value Added Tax Act 1994 §3, schedule 1).

#### 다. 프랑스

프랑스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협의과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연간 부가가치세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일반한계공제와 특별한계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하였으나(Code général des impôts §293B), 2001년에는 이를 폐지하여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sup>12)</sup>

#### 라. 독일

유럽 주요 3국(영국, 독일, 프랑스) 중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기장의무나 매 연도 영업실적에 기초한 정기결산의무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 표준율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Umsatzsteuergesetz §23 (1)).

독일의 표준율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업종구분을 우선 크게 4분류(수공업, 소매업, 기타, 자유직업소득자)로 하고 그 4분류 안에서 구체적인 업종으로 세분한다. 즉 수공업은 다시 23개 업종으로, 소매업은 18개 업종으로, 기타 사업은 6개 업종, 그리고 자유직업소득자는 7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총 54개의 다른 표준율을 가지는 업종

12)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p. 215.

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독일 부가가치세법은 연방재무성에게 연방상원의 승인을 얻어 표준율(Durchschnittssätze)을 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1항). 연방재무성은 과세의 기초가 서로 유사한 관계에 있고, 기장의무나 매년도 영업실적에 기초한 결산서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혹은 이의 계산을 위한 표준율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동조 2항에서 표준율에 의해 산정한 세액은 이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2항).

표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표준율에 의해 과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표준율 적용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늦어도 매 역년의 최초 예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표준율에 의한 과세를 신청하면, 그에 대한 적용은 항상 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이루어진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3항). 신고는 최단 5개 사업연도 동안 유효하나 동 신고는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는 경우 철회신청의 시기는 결정세액의 변경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점까지이다. 철회의 효과는 동 사업연도의 개시와 함께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철회 후 다시 표준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이 경과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3 a 조 3항).

연방재무성이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3항에서는 지난 역년의 매출액이 61,356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표준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동 시행령의 부록표 A 파트에서는 당해 사업체의 전체 매입세액을 계산<sup>13)</sup>하는데 적용하는 업종별 표준율을 52업종으로 세분하여 규정<sup>14)</sup>하고 있고, 동 시행령의 부록표 B 파트에서는 당해 사업체의 매입세액의 일부분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표준율을 6업종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별표 A> 전체 매입세액 계산을 위한 표준율(제70조 제1항)

##### I. 수공업

1. 제빵업 : 매출액의 5.4%
2. 목공업과 가구업 : 매출액의 9.0%
3. 장식, 예술 및 수선용 철공업 : 매출액의 7.5%

13) 한국조세연구원이 2008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독일의 부가가치세 표준율을 사업자의 매출액에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14) 그 중 1업종은 또 다시 3업종으로 세분되어 각각 다른 표준율을 가지므로 실제로는 54업종에 해당된다.

4. 제분업 : 매출액의 5.2%
5. 인쇄업 : 매출액의 6.4%
6. 전기설비 : 매출액의 9.1%
7. 타일, 마루타일업과 기타바닥 및 이의 접착업 : 매출액의 8.6%
8. 이미용업 : 매출액의 4.5%
9. 정원관리업 : 매출액의 5.8%
10. 창문업 : 매출액의 9.2%
11. 건축 및 토목 : 매출액의 6.3%
12. 건축관련철공업, 가스설비업및 수도설비업 : 매출액의 8.4%
13. 도색업 및 도배업 : 매출액의 3.7%
14. 실내 장식업 : 매출액의 9.5%
15. 여성용 모자제조업 : 매출액의 12.2%
16. 차량 수리업 : 매출액의 9.1%
17. 철물제조·수리업과 용접업 : 매출액의 7.9%
18. 재단 및 재봉업 : 매출액의 6.0%
19. 제화업 : 매출액의 6.5%
20. 석상조각업과 석공업 : 매출액의 8.4%
21. 모르타르 및 석회칠업 : 매출액의 4.4%
22. 소면사업 및 소모사업 : 매출액의 2.0%
23. 목수업 : 매출액의 8.1%

## II. 소매업

1. 화훼 및 식물 : 매출액의 5.7%
2. 연료 : 매출액의 12.5%
3. 의약품: 매출액의 10.9%
4. 전기기구, 조명기기, 라디오, 텔레비전 수상기 및 축음기 : 매출액의 11.7%
5. 자전거 및 모터 부착자전거 : 매출액의 12.2%
6. 생선 및 생선가공품 : 매출액의 6.6%
7. 감자, 야채, 과일 및 열대과일: 매출액의 6.4%
8. 라커, 물감 및 기타 도료 : 매출액의 11.2%
9. 우유, 유제품, 유지방제품과 계란 : 매출액의 6.4%
10. 식료품과 기호품 : 매출액의 8.3%
11. 의류 : 매출액의 12.3%

12. 친환경식품 : 매출액의 8.5%
13. 양화업 : 매출액의 11.8%
14. 과자류 : 매출액의 6.6%
15. 각종 섬유제품 : 매출액의 12.3%
16. 동물과 동물용품 :매출액의 8.8%
17. 오락용 잡지 및 신문 : 매출액의 6.3%
18. 야생동물·조류 및 가금육 : 매출액의 6.4%

### Ⅲ. 기타 영업

1. 아이스크림 가게 : 매출액의 5.8%
2. 민박업소(팬션포함) : 매출액의 6.7%
3. 여관 및 음식점 : 매출액의 8.7%
4. 건물 및 창문청소 : 매출액의 1.6%
5. 승용차로 행하는 여객운송 : 매출액의 6.0%
6. 세탁소 : 매출액의 6.5%

### Ⅳ. 자유직업소득자

1. a) 조각가·조소가 : 매출액의 7.0%
- b) 그래픽전문가(상업그래픽전문가 제외) : 매출액의 5.2%
- c) 화가 :매출액의 5.2%
2. 연극, 영화,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과 영상 및 음반제작에 필요한 역무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협력·공급하는 자연인 : 매출액의 3.6%
3. 대학교원 : 매출액의 2.9%
4. 저널리스트 : 매출액의 4.8%
5. 작가 : 매출액의 2.6%

<별표 B> 일부 매입세액의 계산을 위한 표준율(제70조 제2항)

1. 건축기사 : 매출액의 1.9%
2. 수제 노끈제조 : 매출액의 3.2%
3. 변리사 : 매출액의 1.7%
4. 변호사 및 공증인 : 매출액의 1.5%
5. 굴뚝청소부 : 매출액의 1.6%

#### 6. 회계업무전문종사자 : 매출액의 1.7%

농업 및 임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표준율이 적용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1항에서는 농업 및 임업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 제재소의 생산물을 제외한 임업 생산물의 공급의 경우 과세표준의 5.5%, 위의 <별표 A>와 <별표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재소의 생산물, 음료와 알콜음료 및 기타의 용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19%, 그리고 이외의 매출에는 과세표준의 10.7%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당해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직전연도 초부터의 매출에 대해 동 표준율에 의해 과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 과세하여 줄 것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신청은 5년 이상 해당 사업자를 구속한다.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의 효력도 사업연도의 개시로 소급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4항).

독일에서는 또 기장 및 결산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 과세표준에 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3a조). 동 조에서는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법인, 사단 및 재단(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9호의 비영리법인)은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동 법인 등이 기장 및 결산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매출에 7%의 표준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추가적인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입 및 EU역내 취득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3a조 1항). 이 표준율 적용의 제한은 수입 및 EU역내 취득을 제외한 납세의무가 있는 매출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30,678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로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3a조 2항).

독일에서 소규모사업자에 대해 제공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특례제도는 현금주의 과세제도로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125,000유로 이하인 사업자 및 자유직업종사자에 대하여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제도에서도 현금주의에 의한 과세를 허용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마. 일본의 간이과세제도

일본은 전전연도의 과세매출액이 5,000만엔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text{과세매출액} \times \text{세율}) - (\text{과세매출액} \times \text{세율} \times \text{의제매입율})$ 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간이과세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다(소비세법 §37). 이 경우 의제매입율은 사업을 5종류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소비세법시행

령 §57).

1. 제1종 사업(도매업): 100분의 90
2. 제2종 사업(소매업): 100분의 80
3. 제3종 사업(농·업·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 및 수도업): 100분의 70
4. 제4종 사업(기타의 사업): 100분의 60
5. 제5종 사업(부동산업, 운수통신업, 서비스업(음식점업은 제외)): 100분의 50

소비세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1989년에는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을 전전연도의 과세 매출액이 5억엔 이하인 사업자로 하고 의제매입률도 도매업은 100분의 90, 기타의 사업은 100분의 80의 2종류로 나누어 단순화하였다. 이에 따라 그 당시 간이과세 적용대상자가 전 기업의 96.7%에 달하였고, 무엇보다 의제매입율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할 소비세를 사업자가 이익으로 취할 수 있게 하는 숨은 보조금인 "익세(益稅)"가 발생한다는 비판에 부딪혔으나 이는 그 당시 소비세제 도입 그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여진다.<sup>15)</sup>

그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에는 간이과세 적용대상 과세매출액을 4억엔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의제매입률은 2종류에서 도매업 90%, 소매업 80%, 제조업 등 70%, 기타의 사업 60%의 4종류로 세분하였다가 1996년에는 또 다시 도매업 90%, 소매업 80%, 제조업 등 70%, 기타 60%, 서비스업 등 50%의 5종류로 세분하고, 1997년 4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 과세매출액을 2억엔으로 인하하고 2004년 4월 1일부터는 5,000만엔으로 인하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sup>16)</sup>

이상에서 논의된 일본의 연도별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의제매입률을 정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15)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소비세제는 사업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인 것을 배려하여 중소기업자의 납세사무의 간소화와 납세비용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가, 1993년 정부세제조사회의 평성5년 답신에서 "모든 과세사업자에게 본래의 방법에 의한 납부세액 계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는 중소기업자의 사무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세액계산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둔 조치이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제도의 정착이나 납세사무의 숙련도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사업자에 대해 본래의 방법에 의한 납부세액 계산을 요구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岩崎政明, 「消費税の特例計算方法」, 『日税研論集』 Vol. 30,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1995, pp. 303~305).

16) 林宜嗣, 「帳簿方式及び簡易課税制度の検, 消費課税の理論と課題」, 『税務経理協會』, 2003, pp.103~108.

<표 7> 일본의 연도별 간이과세적용기준 및 의제매입률

구 분	1989년	1991년	2004년 이후
적용기준	5억엔	4억엔	5,000만엔
의제매입률	도매업 : 90% 기타 사업: 80%	도매업 : 90% 소매업 : 80% 제조업 등 : 70% 기타의 사업: 60%	제1종 사업(도매업) : 90% 제2종 사업(소매업) : 80% 제3종 사업(제조업 등) : 70% 제4종 사업(기타의 사업): 60% 제5종 사업(부동산업 등): 50%

주: 적용기준은 전전연도의 공급대가 기준

## 2. 소액부징수제도

### 가. EU의 지침

EU의 제6차 지침 제25조 제1항(a)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일반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회원국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간 과세매출액이 €4,000 이하인 납세의무자에 대해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그 이후 확정된 지침에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연간 과세매출액 €5,000로 상향 조정하였다(EU 제6차 지침 §24②). 그 이후 연간 과세매출액을 €35,000에서 €70,000까지 대폭 인상하는 수정안이 2회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제안은 채택되지 않고 현재까지 연간 과세매출액을 €5,000로 유지하고 있다.

### 나. 영국

당해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가 £64,000를 초과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등록의무가 면제되면 세액의 납부의무도 당연히 없다.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 자의 총 공급대가가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신고·납부의무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Value Added Tax Act 1994 §3, schedule 1).

### 다. 독일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17,500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당해 연도의 공급대가가 €50,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에는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Umsatzsteuergesetz §19①). 그러나 이러한 납부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자가 매상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과세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Umsatzsteuergesetz §19②).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17,500를 초과하고 당해 연도의 공급대가가 €17,5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라. 프랑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76,300(변호사 등의 자유직업종사자는 €37,400, 임대용역 이외의 기타의 용역의 경우는 €27,000) 이하인 자로서 당해 연도의 공급대가가 €84,000(변호사 등의 자유직업종사자는 €45,800, 임대용역 이외의 기타의 용역의 경우는 €30,500)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는 납부세액의 면제대상이 된다(Code général des impôts §293B).

#### 마. 일본

일본의 경우 소비세법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한 1989년도에 소비세제 도입 그 자체에 대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납부의무의 면제대상을 1억엔이란 매우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였다가 숨은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그 이후 이를 점차 하향 조정하여 현재는 1,000만엔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일본의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은 매우 높은 금액이다.

#### 바. OECD 국가들의 소액부징수 한계

아래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들 간에 소액부징수 기준은 격차가 매우 크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소액부징수 기준은 \$33,141이지만, 국가 간 차이는 최저 \$2,159의 네덜란드부터 최대 \$93,558의 영국까지 매우 크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같은 일부 OECD 회원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소액부징수 기준을 차별화 하여 서비스업에 대해 더 낮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밖에 호주, 캐나다, 노

르웨이, 스위스 같은 국가들은 납세자 유형별로 소액부징수 기준을 차별화 하고 있는데, 비영리·자선단체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표 8> 각국의 납부의무 면제 적용기준(2008년 기준)

	면제상한기준						등록여부	최소등록기간 (년)
	일반적 기준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낮추어진 면제기준		비영리법인/자선단체 에 대한 기준			
	자국통화	미달러 환산가액	자국통화	미달러 환산가액	자국통화	미달러 환산가액		
호주	50,000	35,461			100,000	70,922	O	1
오스트리아	30,000	34,404					O	5
벨기에	5,580	6,399					O	0
캐나다	30,000	25,000			50,000	41,667	O	1
체코	1,000,000	69,930					O	1
덴마크	50,000	5,828					O	0
핀란드	8,500	9,748					O	0
프랑스	76,300	87,500	27,000	30,963			O	2
독일	17,500	20,069					O	5
그리스	10,000	11,468	5,000	5,734			O	5
헝가리	4,000,000	30,769					O	2
아이슬란드	500,000	4,762					O	2
아일랜드	55,000	63,073	27,500	31,537			O	0
이탈리아	7,000	8,028					X	0
일본	10,000,000	80,645					O	2
한국	None						X	0
룩셈부르크	10,000	11,468					O	5
멕시코	None						X	0
네델란드	1,833	2,159					X	0
뉴질랜드	40,000	26,316					O	0
노르웨이	50,000	5,624			140,000	15,748	O	2
폴란드	39,700	20,895					O	3
포르투갈	10,000	11,468					O	0
슬로바키아	1,500,000	86,705					O	1
스페인	None						X	0
스웨덴	None						X	0
스위스	75,000	44,118			150,000	88,235	O	0
터키	*						O	0
영국	64,000	93,558					O	0

주: 터키의 경우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면세기준이 그대로 VAT에서도 면세기준으로 적용됨  
출처: OECD, *Consumption Tax Trends*, OECD, 2008, p. 50.

## V.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

### 1.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 가. 간이과세제도 적용기준의 적정 수준

앞의 통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2005-2007년의 평균 총 납세의무자 및 간이과세자의 인원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비교해 보면, 납세인원수는 간이과세자가 40%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은 1% 및 3%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총 납세의무자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나,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자신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까닭에 간이과세사업자 비율이 높다면 이는 문제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 영역에 안주하려는 자영업자들로 인해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이는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탈세의 온상이 된다. 또 부가가치세의 탈루는 소득세의 탈루로 이어진다. 사업자들의 탈루는 근로소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업자들은 자신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간이과세사업자 영역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가? 1999년 연말을 기준으로 기존의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통계를 요약한 아래 <표 9>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9> 부가가치세 사업자 형태별 납세인원

(단위: 명, %)

	1999년 2기		2000년 2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법인 일반과세자	232,474	7.8	278,657	8.2
개인 일반과세자	1,059,109	35.3	1,442,987	42.6
간이과세자	586,800	19.5	1,669,128	49.2
과세특례자	1,120,573	37.4	-	-
합계	2,998,956	100	3,390,772	100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0~2001

1999년까지 전체 부가가치세 납세자 중 37.4%를 차지하던 과세특례자가 2000년에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1999년의 간이과세자중 약 1/3 정도만이 2000년에 일반과세자가 되었다. 1999년까지 과세특례와 간이과세의 기준이 연 매출액 4,800만원 및 1억 5천만원이었고, 2000년부터는 간이과세적용의 기준이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9년까지의 간이과세자는 2000년에는 전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어야 한다. 매출액의 평균적인 증가액을 무시하고, 1999년까지의 매출액 신고가 정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업자 인원의 2/3 정도, 즉 40만명 가까운 사업자는 간이과세 영역에 안주하기 위해 매출을 과거연도보다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얼마나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 사업자들 스스로 체감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sup>17)</sup>

#### 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지나친 조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사업자간 조세부담 불공평과 경제적 왜곡 초래

간이과세제도는 본래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의 도모라는 취지에서 구상되었으나, 이 취지를 살리는 것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더욱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유도하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작아지게 되었다.<sup>18)</sup>

결과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은 10%이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율은 2%, 3% 혹은 4%라는 사실<sup>19)</sup>만을 단순하게 비교하여 간이과세제도가 소규모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어 사업자들이 조세부담의 경감 내지 회피수단으로서 간이과세자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로 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수취 기피, 위장 휴폐업, 거래금액의 누락 및 분산과 같은 납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제도 전반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7) 박용오, 「간이과세제도, 이제 개정해야 할 때이다.」, 『계간 세무사』, 2005년 겨울호, 2005

18)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합계표를 제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이 된다.

19)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의 산식에 의해 계산함으로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제2의 세율로 기능하게 된다.

#### 다. 세금계산서의 정상적 흐름의 단절에 의한 근거과세 저해

현행 부가가치세제가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상호검증으로 근거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어서 경제 전체에서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수수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일반과세자와의 거래가 불가능하고, 극히 드물기는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간이과세자로 머물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업분할을 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매입세액 불공제에 의한 누적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의 수직적 통합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간이과세제도가 소비세라는 과세제도로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 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정 수준

간이과세제도와 같은 성격의 제도를 가지는 주요 국가인 독일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 업종을 5단계로 구분하여 50%에서 90%까지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규정하고 있다. 가중평균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의 입수가 어려우므로 단순평균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평균은 70%이며, 이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3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단순평균으로 볼 때 그 수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54개 업종의 표준율을 평균해 보면 매출액의 7.3%를 평균적으로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준다. 19%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이는 우리나라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미로 평균 61.5%로서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나 매출액 중에는 경감세율인 7%로 과세되는 업종이 섞여 있으므로 이 61.5%의 수치는 다소 과장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업종의 수나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적어도 독일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50%가 되도록 표준율이 설정되어 있고, 이는 EU지침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표준율제도(간이과세제도에 해당하는)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조세부담이 유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키는 것이다.

간이과세제도에서는 부가가치율에 의해 납부세액이 계산되므로 부가가치율의 산정이 납부세액 계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율은 그 산출에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납세자에게 설득력을 가진다. 만약 부가가치율이 당해 업종의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취급되거나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차이로 인한 공평성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제 부가가치율보다 낮은 때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더 적은 부가가치

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차액만큼 정부가 간이과세자에게 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경쟁력에서 우위의 위치에 서게 된다.<sup>20)</sup> 반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제 부가가치율보다 높은 때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자기의 영업이익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나, 이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간이과세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서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에 의거 3종류로 단순화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실제 부가가치율에 비해 높거나 낮게 적용되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그리고 업종이 다른 간이과세자 간에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가져오고 간이과세자로 머물기 위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야기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국세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14종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05년~2007년)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표 10>과 같다.

<표 10> 업태별 최근 3년간(2005-2007년) 평균 부가가치율

(단위: %)

업 태	평균 부가가치율 <sup>1)</sup>	업종별 부가가치율 <sup>2)</sup>	차이	업 태	평균 부가가치율 <sup>1)</sup>	업종별 부가가치율 <sup>2)</sup>	차이
농·수·임·어업	18.5	30.0	11.5	건설	27.8	30.0	2.2
광업	-7.5	-	-	음식	38.5	40.0	1.5
제조	19.5	20.0	0.5	숙박	39.9	40.0	0.1
전기·가스·수도	11.7	20.0	8.3	운수·창고·통신	49.8	40.0	-9.8
도매	23.3	-	-	부동산임대	30.9	30.0	-0.9
소매	25.0	20.0	-5.0	대리·중개·도급	43.9	30.0	-13.9
부동산매매	-8.4	-	-	기타서비스	31.8	30.0	-1.8

주: 1. 연도별 업태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작성한 자료임

2. 실제로 조사된 업태별 부가가치율의 평균

3.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2008

20) 예를 들면,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7,000원(매입세액 700원 별도)에 구입한 상품을 10,000원(매출세액 1,000원 별도, 부가가치율 30%로 가정)에 판매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300원(매출세액 1,000원-매입세액 700원)이 되고 영업이익은 3,000원(공급가액 10,000원-매입가액 7,000원)이 되나, 간이과세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220원(공급대가 11,000원×업종별 부가가치율 20%×세율 10%)이 되고 영업이익은 3,080원(공급대가 11,000원-매입가액 7,700원-납부세액 220원)이 되어 일반과세자에 비해 80원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납부세액은 80원(공급대가 11,000원×업종별 부가가치율 20%×세율 10%-매입세액 700원×업종별 부가가치율 20%)이 되고 영업이익은 3,220원(공급대가 11,000원-매입가액 7,700원-납부세액 80원)이 되어 그 차이는 더 많아지게 된다. 이는 소매업에 대해 정부가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20%와 실제 부가가치율 30%와의 괴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이다(이성식, 2005,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월드텍스연구회 발표논문집).

위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별로 최근 3년간 평균 실제부가가치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격차는 운수·창고·통신업의 -9.8%포인트에서 농·수·어·임업의 11.5%포인트에 이른다.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약 20%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 마.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조의 지나친 단순성으로 인한 왜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에 의거 3종류로 단순화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제도의 단순화에는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업종별 실제 부가가치율과의 괴리가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업종이 다른 간이과세자 간에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가져오게 된다. 일본에서는 5개의 단계로, 그리고 독일에서는 54개의 업종으로 구분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구조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서 왜곡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 바. 간이과세배제업종의 설정

기본적인 시각에서 보면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합리성을 떠나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두어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 불공평성이 더욱 큰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특히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첫째, 개별기준별 적용상 지역간·업종간 구분의 차별로 인해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발생한다. 일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구분의 차이로 서울특별시·광역시,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으로 인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간이과세자와의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엄연히 간접세에 해당하며 조세전가를 통해 징수하는 조세로서 일부 업종 또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간이과세배제기준 규정을 두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별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둘째, 간이과세배제기준 규정의 구분별 특별한 합리적인 기준도 없으며 복잡하여 전문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 대형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보관 및 창고업, 서비스, 통신업 등의 경우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등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시지역 등은 일반과세자로 기타지역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적인 합리성을 벗어나 투자금액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자를 위해 구분되어야 하는지, 탈세를 막기 위해 구분되어야 하는지 등 어떠한 합리성이나 특별한 기준도 없고, 매년 발간되고 있는 간이과세배제기준 책자를 보지 않는 한 어떤 전문가도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대상자를 쉽게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셋째, 간이과세배제기준 규정을 둠으로 인해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경우 매년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을 위해 업종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 적용을 위해 매년 이를 발표함으로써 이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 2. 소액부징수제도의 문제점

### 가. 적용기준의 적정성

소액부징수제도는 세액의 신고·납부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영세사업자를 납세의무자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부담을 줄이고 세정당국의 영세사업자의 세무관리에 따르는 행정력과 징세비를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현재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납부의무의 면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도 그 자체가 결코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sup>21)</sup>

그러나 소액부징수제도의 적용기준이 너무 높으면 일반사업자와의 사이에 가격경쟁에 왜곡을 초래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자가 거래단계의 중간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적과세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당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정부가 당해 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적용기준이 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로 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1,2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바, 1,200만원이 적절한 수준의 금액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1,200만원이라는 절대적 수준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만 이 기준에 의해 소액부징수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사업자 중에서 소액부징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기준 60%에 달하고, 일반과세자 중에서 소액부징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의 절대적 수준에 대해 살펴보자. 이 수준에 대해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표 8>의 각국의 납부의무 면제 적용기준

21) 주로 소득이 좀 더 적은 소비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세사업들에게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극히 빈한한 소비자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Alan A. Tait, *Value Added Tax*,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1, p. 5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적용기준금액이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대한 면제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1일당 100,000원을 과세기간의 일수 182로 곱하면 18,200,000원이 되므로 이 보다는 낮고, 한편 일반급여자의 경우 가족이 4인인 때의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적용대상 보다는 높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로 공제하는 추가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등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다.<sup>22)</sup> 최근 3년간 총 간이과세자 중 납부의무 면제대상자의 비율에 있어서도 인원수 비율은 84% 정도이나, 과세표준 비율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로서 현행 적용기준 금액이 그렇게 불합리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미납부 문제

독일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소액부징수제도를 규정할 때 일정규모이하의 매출액을 가지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징수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동시에 일정규모이하의 매출액이 사업자의 당해연도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역년의 매출액으로 규정되었기에 사업자는 당해연도에는 이미 소액부징수자로서 연초부터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액부징수자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나서 소액부징수자이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는 일도 흔하게 발생한다.

## VI.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

### 1.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이과세제도를 그대로 계속 두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가. 간이과세제도의 존치 여부

22) 이성식,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월드텍스연구회 발표논문집』, 2005, p. 25.

간이과세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다. 먼저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거는 영세사업자에게 기장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으로 볼 때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머무는 사업자들 중 많은 사업자들은 기장을 하고 일반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당하게 간이과세자로서 머무는 것은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기 때문이므로 정부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하여 간이과세자 전체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되 진실로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제도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sup>23)</sup>

한편 간이과세제도는 그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세법에 관한 지식의 부족과 사무능력의 미숙이라는 납세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한 제도이며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24)25)</sup>

전자는 위장된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의 회피, 소득세의 포탈 등을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안주하려고 하는 사업자를 엄두에 둔 의견이라면, 후자는 사실상 영세사업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간이과세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자를 엄두에 둔 것이다.

앞의 <표 1>, <표 2> 및 <표 3>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2005-2007년의 평균 총 납세의무자 및 간이과세자의 인원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보면 납세인원수는 간이과세자가 40%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은 1% 및 3%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납세인원수에 비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이렇게 미미하다는 것은 이러한 납세자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리를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과 수준으로 하는 것은 징세비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계가 영세사업자들의 실제적인 경제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앞의 <표 9>에서 이미 밝혀진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영세사업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간이과세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소수이더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들 모두에게 소액부징수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을 고려할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한 연간 부가가치의 최고액은 960만원(소매업 등의 경우) 내지 1,920만원(음식점업 등의 경우)으로 인건비나 금융비

23) 한국조세연구원,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방안』, 2008, pp. 123~125.

24) 최명근, 『한국조세의 과제』, 도서출판 우현, 1992, pp. 351~352.

25) 과세특례에 대한 人民主義的 비판도 옳지 않다. 이 제도는 세수와 징세행정 사의의 必要惡인 까닭이다(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3, p. 860).

용의 지급 등을 감안한다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는 것이 되어 매우 영세한 수준이므로 이러한 매출액 수준이나 이에 따른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업자들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제도는 근거과세의 정착과 과표 양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간이과세제도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정 여부

사업자의 매출액이 동일하더라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르므로 부가가치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20%, 30%, 40% 3단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실질적인 부가가치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3단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일본의 5단계나 독일의 54단계의 사례와 같이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과 같이 54단계 정도의 세분화는 부가가치세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sup>26)</sup> 그러나 소득세에서 필요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이 전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작업의 일부분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사하고, 이를 30내지 50여 업종으로 정리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정한다면 조사비용 측면이나 업종별 형평성 측면에서 현재보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 일본과 같이 5단계나 또는 10단계 이하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sup>27)</sup>

## 2. 소액부징수제도

### 가.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소액부징수자들이 전체 사업자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는 하나, 소액부징수의 금액기준은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이를 더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26) 한국조세연구원,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방안』, 2008.

27) 간이과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1995년의 경우와 같이 11종류로 구분하는 것은 업종의 구분이 어렵거나 겸업의 경우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므로 이는 간편한 방법에 의한 납세의무의 이행이라는 간이과세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독일의 매상세법에서는 업종을 취급상품별로 58종류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대해 표준율을 정하고 있다(독일 매상세법시행령§69, §70 및 부표). 그러나 표준율을 이렇게 세분하여 운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간이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복잡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실제로 소액부징수 기준 이상의 사업 규모를 가지는 사업자들이 소액부징수 상태에서 서서히 빠져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미납부 문제

소액부징수제도를 운영할 때 일정규모 이하의 매출액을 가지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징수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동시에 사업자의 직전 역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VII.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표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현 황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자신의 소득이 아닌 최종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조세로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소득이 아닌 것이나, 현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호텔, 고급음식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표시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있다.<sup>28)</sup>

또한 일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함으로 인해 마치 일반과세자인 것처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기능 및 역할

#### 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공급하는 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전가 및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자료, 대금 영수증의 역할을 통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28)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일반영수증 등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능 및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납세자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표시하도록 서식 등에 강제규정 되어 있지 않아 공급하는 자마다 단말기 설치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서로 다른 단말기회사의 서식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어 통일된 서식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최초 신용카드 기기를 설치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단일화된 서식이 없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기기 설치업자가 최초로 작성한 서식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자의 이런 발행에 대한 책임은 단말기회사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문제점

#### 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 표시한 경우

먼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일반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 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전가 사실과 매입세액공제 근거자료 및 증빙자료로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탈루할 여지가 전혀 없고 세금영수증의 역할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

둘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허위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 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세액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마치 일반과세자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로부터 받은 일부의 부가가치세 세액을 탈루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일반과세자와 최종소비자로 구분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일반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 표시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나 최종소비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나, 공급하는 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공급하는 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 표시한 경우,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 전가된 부가가치세 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으로써 추후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공급하는 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서 허위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한 경우,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실제 부담될 부가가치세 세액 10%는 아님에도 전액 조세부담을 진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 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먼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표시 할 수 없으므로 해당사항은 없으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고 전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다음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하는 자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세액 상당액을 확인 할 수 없어 전가된 부가가치세 부담 사실과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최종 소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고,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공급하는 자가 탈루를 하는 것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결국은 부가가치세의 제 기능을 상실하여 납세의식 저하와 영수증 등 수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 구분표시 필요성과 개선방안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 구분표시를 하지 않아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가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미공제, 납세의식 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 부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납세의식 저하와 세금영수증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가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와 납세의식 고취, 부가가치세의 제 기능을 위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하여 발행할 필요성이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서식의 통일 필요

현재 단말기회사,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서식을 이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도 혼란을 야기 시키며 국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있고 이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기능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자료, 송장의 역할, 영수증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듯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통일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서식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나. 단말기설치 회사에 대한 명령사항 교부 및 이행의무 부여

신용카드기를 설치하는 단말기설치 회사마다 과다경쟁으로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서식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단말기회사는 조세수입과 납세의식, 국민에 미치는 직접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말기설치 회사의 경우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법인, 업종(유흥업소 등),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납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액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명령사항을 교부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다. 공급하는 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 필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예: 발행가액에 1%)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구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전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 한국조세연구원, 근간 예정.
- 김유찬·윤태화·서희열, 「소비세 분야의 세제개혁 방향」,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3호, 2006.
- 박용오, 「간이과세제도, 이제 개정해야 할 때이다.」, 『계간 세무사』, 2005년 겨울호, 2005.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 한국조세연구원.
- 이성식,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월드택스연구회 발표논문집』, 2005.
- 이성식,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3.
- 재무부, 『한국부가가치세제사』, 1990.
- 재무부, 『부가가치세법 해설』, 1990.
- 재정경제원, 『간추린 개정세법』, 1996.
- 재정경제부, 『간추린 개정세법』, 2000.
- 정덕주·박성배, 「소규모사업자의 기장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3호, 2008.
- 최명근, 『한국조세의 과제』, 도서출판 우현, 1992.
- 최명근·나성길,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2004.
- 한국조세연구원,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방안』, 2008.
- 岩崎政明, 「消費税の特例計算方法」, 『日税研論集』 Vol. 30,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1995.
- 林宜嗣, 「帳簿方式及び簡易課税制度の検討」, 『消費課税の理論と課題』, 税務経理協會, 2003.
- Alan A. Tait, *Value Added Tax*,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1.
- OECD, *Taxing Consumption*, Paris, 1988.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Paris, 2008.
- D. Williams, *Value Added Tax, Tax law design and drafting*, Kluwer Law International, Netherlands, 2000.
- B. J. Terra and A. J. Kajus, *A Guide to the Sixth VAT Directive*, IBFD, 1991.

제2주제

# 납세의식 분석과 정책방향

2009. 6.

박 명 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II. 납세의식 측정 방법 .....	3
1. 납세의식 개념 정립 .....	3
가. 납세의식 관련 주된 지표의 구성 .....	4
나. 납세의식 관련 보조 지표의 구성 .....	5
2. 납세의식 관련 각종 지표 생성 방법 .....	6
3. 설문지 설계 .....	6
III.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	9
1. 조사설계 및 표본구성 .....	9
2. 기술통계량 요약 .....	11
가.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경제활동 변수 .....	11
나. 납세의식 지표 관련 변수 .....	13
3. 납세의식 지표 생성 .....	27
가. 주된 지표 .....	27
나. 보조 지표 .....	28
4. 납세순응행위 실증분석 .....	31
IV. 결론 및 시사점 .....	38
부 록 .....	41

## 표 목 차

<표 Ⅲ-1> 표본 구성 .....	10
<표 Ⅲ-2> 인구통계학적 변수 .....	11
<표 Ⅲ-3> 연평균 소득수준 분표 .....	13
<표 Ⅲ-4> 개별 지표의 기술통계량 .....	28
<표 Ⅲ-5> 인구특성변수별 개별 지표 기술통계량 .....	30
<표 Ⅲ-6>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	33
<표 Ⅲ-7>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외생변수 포함 .....	37
<부표>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단순평균 방식 .....	41

## 그림 목차

[그림 Ⅲ-1]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 .....	14
[그림 Ⅲ-2] 각종 세금에 대한 성실납부의향 .....	15
[그림 Ⅲ-3] 실제 납세순응행위도(유효응답자 기준) .....	17
[그림 Ⅲ-4] 가상 납세순응행위도 .....	19
[그림 Ⅲ-5]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평가 .....	20
[그림 Ⅲ-6]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평가 .....	21
[그림 Ⅲ-7] 교환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 .....	22
[그림 Ⅲ-8] 조세 형평성별 “적정하다”는 평가 비율 .....	22
[그림 Ⅲ-9] 주관적 조세이해도 .....	24
[그림 Ⅲ-10] 객관적 조세이해도: 정확도 .....	25
[그림 Ⅲ-11] 성실납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평가 .....	26
[그림 Ⅲ-12]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구조도 .....	31

# I. 서 론

## 1. 연구배경

- 최근 국내외적인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의 우려가 제기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직접지출 확대, 감세)을 운용중이며 앞으로도 일정기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수요가 확대될 전망
    - 기존 이미 인식된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향후 지속적인 재정 수요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
  - 세수측면에서도 경기침체 및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박형수(2009)에 따르면 지난 4월에 통과된 추경편성을 고려하면 관리대상 수지 적자규모가 51조원(GDP의 5.0%),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5.6%에 달하는 등 외환위기 직후보다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
  
-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주요 국세가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
  - 경제위기하에서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세수증대가 힘든 상황에서 현행

조세체계 내에서 잠재적인 조세수입과 자진 신고세액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조세격차(tax gap)를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는 국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
  
- 이처럼 성숙한 납세의식의 중요성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
  
-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측정하는 사업을 전개중이고, 그 1차 결과를 발표하고자 함
  - 본 사업을 통해 막연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다거나 낮다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II. 납세의식 측정 방법

### 1. 납세의식 개념 정립

- 납세의식은 납세자들이 조세일반에 대해 가진 총체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으로 매우 포괄적인 개념
  - 협의의 납세의식은 세금을 기꺼이 내는 납세자의 마음자세 또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지표를 생성·분석할 것을 목표로 함
  
- 납세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indicators)로 주된 지표와 보조 지표로 구분한 후 주된 지표로는 ①성실납세의향 지표와 ②납세순응행위 지표를, 보조지표로는 ③조세형평도 지표와 ④조세이해도 지표를 선정
  - (다변수 선정 사유) 매우 포괄적인 개념인 납세의식에 대한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의식 수준을 하나의 변수 또는 하나의 설문 응답결과에 기초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의도
  - (주된 지표 선정 사유 1) 기존 외국연구를 보면 협의의 납세의식과 유사한 개념인 '납세윤리'(tax morale)를 '납세에 대한 내재적 동기'(the intrinsic motivation to pay taxes), '납세를 기꺼이 하는 마음상태'(taxpayers' willingness to pay taxes), '납세순응에 대한 마음가짐'(an attitude regarding tax compliance) 등으로 정의

- 협의의 납세의식을 나타내는 성실납세의향을 주된 지표 중 하나로 선정
- (주된 지표 선정 사유 2) 성실납세의향이 반드시 성실납세 행태로 반영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납세순응행위도 주된 지표 중 하나로 선정
- 성실납세의향은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제약 등의 이유로 탈세나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납세순응을 하는 경우보다 납세의식이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
- 납세순응행위가 모든 경우에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님(예: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독재정권하의 국가)
- (보조 지표 선정 사유)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평가 및 조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도 납세의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 지표로 활용

#### 가. 납세의식 관련 주된 지표의 구성

- (성실납세의향) 성실납세의향 지표는 납세자가 자발적인 동기나 비자발적인 동기를 막론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을 종합한 지표
  -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할 의향은 성숙한 납세의식을 나타낸다고 상정
  - 다만, 성실납세의향은 그 의향과 같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식 수준의 전부가 아닌 일정 부분을 설명한다고 전제
- (납세순응행위)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탈세 및 조세회피의 실제적/가상적 경험들을 종합한 지표로, 실제납세순응도 지표와 가상납세순응도 지표로 구분 가능하도록 설계
  - 실제납세순응행위 지표: 납세자가 실제로 지난 3년간 소득누락, 매출누락 및 계약서 왜곡 등과 같은 각종 탈세의 경험이 있는지를 종합한 지표

- 가상납세순응행위 지표: 납세자가 주어진 가상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탈세 또는 조세회피 행위의 선택여부를 나타내는 지표
- 탈세나 조세회피 행위를 하지 않는 납세순응행위는 성숙한 납세의식을 나타낸다고 상정
- 다만, 납세순응행위 자체만으로는 그 행위가 납세자의 내재된 동기 (intrinsic motivation)에서 유발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의식 수준의 전부가 아닌 일정 부분을 설명한다고 전제

#### 나. 납세의식 관련 보조 지표의 구성

- (조세형평도) 조세형평도 지표는 납세자가 현행 조세제도를 통해 체감하는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및 교환의 형평성을 종합한 지표<sup>1)</sup>
  -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평가할수록 납세순응행위가 낮다는 형평이론 (equity theory, Adams 1963)에 기초하여 조세형평도를 보조 지표로 선정
  - 수평적 형평성: 자신이 속한 소득군의 평균 납세수준과 자신의 납세수준에 대한 비교·평가
  - 수직적 형평성: 자신과 다른 소득군의 납세수준과 자신의 납세수준에 대한 비교·평가
  - 교환의 형평성(exchange equity): 자신의 납세수준과 납세의 반대급부로서 정부로부터 공급받는 공공서비스의 비교·평가
  
- (조세이해도) 조세이해도 지표는 납세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 및 관련 법규와 조세행정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종합한 지표

---

1) 수평적 형평성: 자신이 속한 소득군의 평균 납세수준과 자신의 납세수준을 비교하여 평가  
수직적 형평성: 자신과 다른 소득군의 납세수준과 자신의 납세수준을 비교하여 평가  
교환의 형평성: 자신의 납세수준과 납세의 반대급부로서 정부로부터 공급받는 공공서비스를 비교하여 평가

-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는 성숙한 납세의식 형성에 필요한 요소로 상정
- 다만, 세법이나 세정의 허점(loophole)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활용될 소지가 존재하여 보조 지표로 활용
  - 특히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조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불성실한 납세행태를 유발하는 것이 가능

## 2. 납세의식 관련 각종 지표 생성 방법

- 본 연구에서 상정한 납세의식의 주된 지표와 보조 지표는 2~4 가지 설문항목의 응답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만들 필요성 존재
  - 본 연구에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 단순 평균방식 적용
    - 각 설문항목에 대한 차별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부족에 기인
- 각 개별 지표를 생성하는 작업 단계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각 설문항목의 응답한 값을 긍정 또는 부정 즉 더미변수로 전환
  - 2단계: 각 설문항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표 생성

## 3. 설문지 설계

-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납세의식 지수를 생성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구성

- ① 인구통계특성 질문 파트
- ② 조세이해도 질문 파트
- ③ 성실납세의향 및 납세순응행위에 관한 질문 파트
- ④ 조세제도 형평성 및 조세제도의 평가에 관한 질문 파트

□ “인구통계특성 질문 파트”는 다음 9가지로 문항으로 구성

- 거주지역, 성별, 나이, 소득수준, 학력, 결혼 여부, 근로형태, 종교, 복권 구입 여부 등에 대한 질문

□ “조세이해도 질문 파트”는 주관적인 세금에 대한 이해도에 관한 문항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세법 및 세무행정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예: 부가가치세 세율, 주택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

□ “성실납세의향 질문 파트”는 세금을 납부할 때 적극적·긍정적 의향, 범죄행위로서의 탈세에 대한 처벌을 고려한 소극적인 납세의향 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자영업자라면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성실납세의향,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납부에 대한 성실납부의향을 직접적으로 질문

□ “납세순응행위 질문 파트”는 실제 납세순응행위의 경험을 나타내는 질문과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 납세순응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

- 실제납세순응행위지수: 지난 3년 동안 실제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공제를 과대계상했는지 여부, 부동산 거래시 축소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및 매출을 축소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질문으로 구성

- 가상납세순응행위지수: 가상의 현금매출에 대한 보고 여부 및 현금대금 지급시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판매자의 제의에 대한 동의 여부 등 2가지 질문으로 구성

- “조세형평도 질문 파트”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형평성의 평가,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형평성 여부, 그리고 본인의 세금 수준에 대한 공공서비스 혜택의 형평성 여부 등 3가지 질문으로 구성

### Ⅲ.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 1. 조사설계 및 표본구성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별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대상자: 만 25~64세의 우리나라 일반 국민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와 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
  - 실제 조사된 유효표본: 총 2,339명(취업자 2,135명, 실업자 204명)
    -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설계를 행함
    - 1단계: 전국을 16개 시·도별로 층화한 후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 이용
    - 2단계: 200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 결과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자영업자/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지역별·연령별·성별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여 표본 할당
    - 3단계: 각 분할그룹(segmentation)마다 할당된 표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설문 진행
  
- 실제 조사된 2,339명의 표본 구성을 정리하면 <표 III-1>과 같음
  -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약 63% 차지
  - 응답자 중 30대, 40대 연령대가 전체의 59.3% 정도 차지
  - 근로형태로는 임금근로자 약 54.4%, 자영업자 33.6%, 기타 12.0%

- 거주지역별 응답자 분포는 수도권(서울, 경기)이 약 41.9%이고 나머지 지역이 58.1% 정도

<표 III-1> 표본 구성

(단위: 명)

	연령	합계	임금근로자	자영자/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남자	25~29세	143 (6.1%)	126	10	0	7
	30~39세	387 (16.6%)	277	102	2	6
	40~49세	487 (20.8%)	237	241	4	5
	50~59세	360 (15.4%)	117	231	0	12
	60~64세	90 (3.8%)	25	53	2	10
	합계	1,467 (62.7%)	782 (33.4%)	637 (27.2%)	8 (0.3%)	40 (1.7%)
여자	25~29세	143 (6.1%)	127	4	0	12
	30~39세	239 (10.2%)	159	32	11	37
	40~49세	275 (11.8%)	142	58	29	46
	50~59세	173 (7.4%)	56	43	22	52
	60~64세	42 (1.8%)	6	13	6	17
	합계	872 (37.3%)	490 (21.0%)	150 (6.4%)	68 (2.9%)	164 (7.0%)
합계	2,339 (100%)	1,272 (54.4%)	787 (33.7%)	76 (3.2%)	204 (8.7%)	

주: 괄호 안은 전체 인원 대비 비율을 뜻함.

## 2. 기술통계량 요약

□ 기술통계량은 가중치를 고려한 후의 값임

### 가.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경제활동 변수

□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 결혼상태: 배우자가 있는 경우 76.7%, 배우자 없는 경우 23.3%
- 학력: 대졸(전문대 포함) 47.9%, 고졸 37.0%, 중졸 이하 10.1%, 대졸 이상 5.0%
- 종교: 무교 41.2%, 개신교 23.5%, 불교 23.7%, 천주교 10.1%, 기타 1.4%

<표 III-2> 인구통계학적 변수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체		2,339	100.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794	76.7
	배우자 없음	545	23.3
학력	중졸 이하	238	10.2
	고졸	863	36.9
	대졸	1,118	47.8
	대졸 이상	116	4.9
	무응답	4	0.2
종교	개신교	550	23.5
	천주교	237	10.1
	불교	555	23.7
	기타 종교	33	1.4
	없음	964	41.2

주: 가중치를 고려한 응답자 수입

□ 응답자들의 소득수준

- 급여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연금수령액 등을 종합한 연평균 소득수준에 대한 전체 응답자 평균은 2,418만원으로 조사
  - 현재 무급가족종사자나 무직자의 연평균 소득수준도 포함
- 성별: 여성은 4천만원 미만인 전체의 92.3%이며 이 중 1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자가 62.2%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
  - 반면 남성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이 약 32.8%를 차지해 여성의 평균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이 69.0%로 가장 많았고, 4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이 24.6%인 것으로 조사
  - 반면 그러나 자영업자(사업주 포함)는 4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이 36.3%, 8천만원 이상이 16.7%로 전체의 53.1%가 4천만원 이상의 소득자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무급가족종사자는 중 83.5%는 1천만원 미만, 나머지 4.3%는 1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으로 조사
  - 무직자의 경우 중 89.4%는 1천만원 미만, 나머지 10.6%는 1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으로 조사

<표 III-3> 연평균 소득수준 분표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1천만원 미만	1천만~4천만원 미만	4천만~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 체		2,339	41.7	38.7	15.7	3.9
성 별	남 성	1,110	9.1	22.8	12.4	3.2
	여 성	1,229	32.7	15.8	3.3	0.8
연 령	25~29세	292	5.1	6.8	0.5	0.1
	30~39세	686	10.5	12.8	5.2	0.8
	40~49세	643	10.3	9.5	6.2	1.5
	50~59세	494	9.9	6.7	3.3	1.2
	60~64세	224	5.9	2.9	0.5	0.2
학 력	고졸이하	1,101	52.4	35.5	9.7	2.5
	대졸이상	1,234	32.4	41.3	21.0	5.2
	무응답	4	0.0	100.0	0.0	0.0
근 로 형 태	임금근로자	912	1.3	26.9	9.6	1.2
	자영업자/사업자	390	1.0	6.8	6.1	2.8
	무급가족종사자	98	3.5	0.7	0.0	0.0
	무직자	939	35.9	4.3	0.0	0.0

#### 나. 납세의식 지표 관련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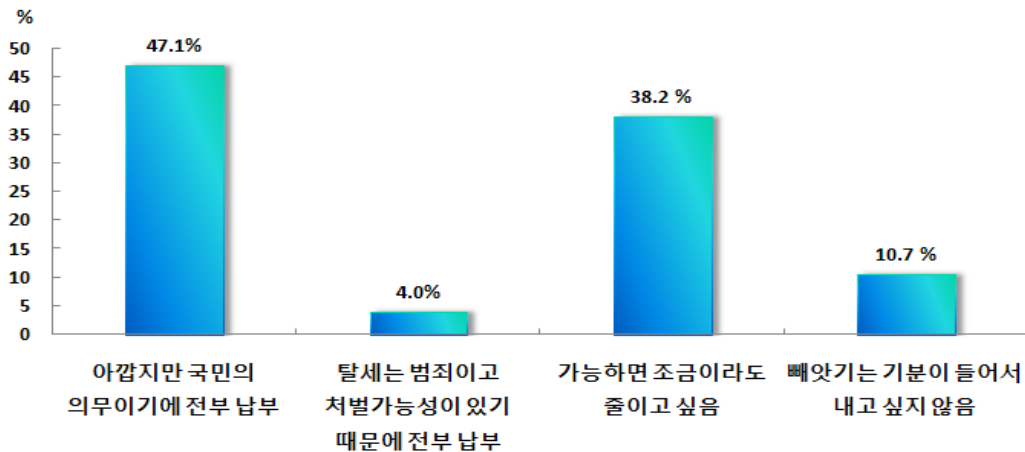
##### 1) 성실납세의향 지표

성실납세의향 지표는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관한 질문과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및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들로부터 생성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낸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7.1%, '탈세는 범죄행위이고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낸다'라고 소극적인 성실납세의향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약 4.0%,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라는 응답자는 38.2%,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 내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나타남 -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를 합하면 절반 이상(51.1%)의 응답자가 성실납세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응답자 유형별로는 저연령대(20대)와 고연령대(60대)의 성실납세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정보다는 여성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보다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의 성실납세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영업자 계층은 성실납세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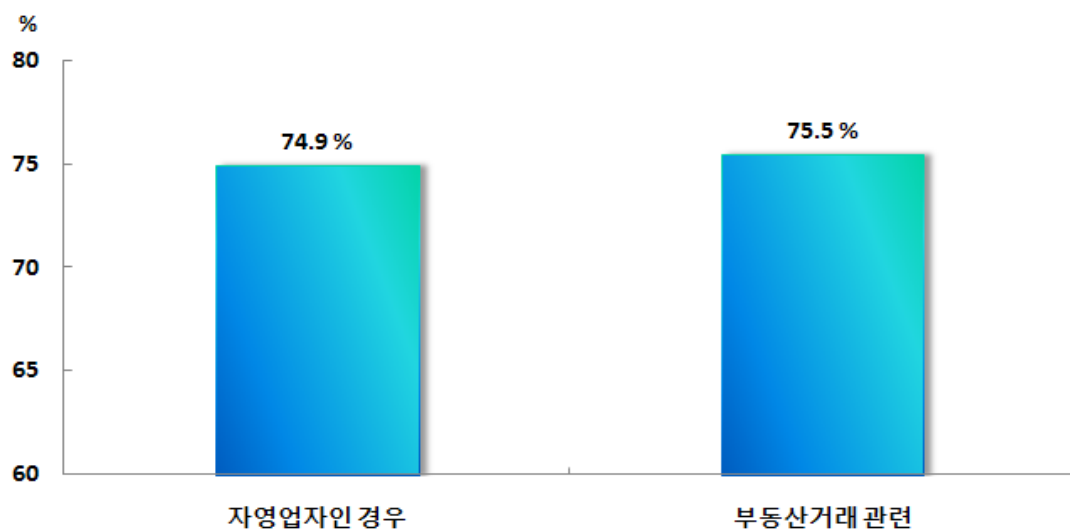
[그림 III-2]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



- (세금의 정직한 납부에 대한 의향)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및 부동산 거래를 행한 경우를 각각 가정하 다음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 두 질문들에 대해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성실납세의향을 나타냄  
(자영업자의 경우: 74.9%, 부동산 거래의 경우: 75.5%)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두 질문 모두 남정보다는 여성이, 임금근로자보다는 사업주/자영업자 계층이, 대출 이상의 고학력 계층보다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계층이 성실납세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
-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계층보다는 기타시도에 거주하는 계층의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는 중간 소득층(1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보다는 저소득층(1천만원 미만)과 고소득층(8천만원 이상)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높게 나타남

[그림 III-3] 각종 세금에 대한 성실납부의향



## 2) 납세순응행위 지표

-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실제 납세순응행위의 경험을 나타내는 실제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질문들과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 납세순응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질문들로 구분
  - 실제 납세순응행위 질문은 과거 3년간 ①소득의 축소신고 경험, ②부동산 거래시 거래금액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 ③매출 축소 및 비용과다신고 경험으로 구성
  - 가상 납세순응행위 질문은 두 가지 가상 상황 속에서 응답자들이 납세순응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들로 구성

### 가) 실제 납세순응행위

- (과거 3년간 소득 축소신고 경험여부) 응답자 10명 중 9.6명 정도(95.6%)가 소득을 축소신고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타 연령대보다 40대에서, 타 근로형태보다 사업자/자영업자 직군이 소득을 축소신고한 경험이 없다고 더 많이 응답
  -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을 축소신고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과거 3년간 부동산 거래 축소계약서 작성 여부) 유효 응답자<sup>2)</sup> 10명 중 1명 미만(8.2%)이 축소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간연령대(30/40/50대)가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이

---

2) 지난 3년간 부동산 거래를 행했던 응답자를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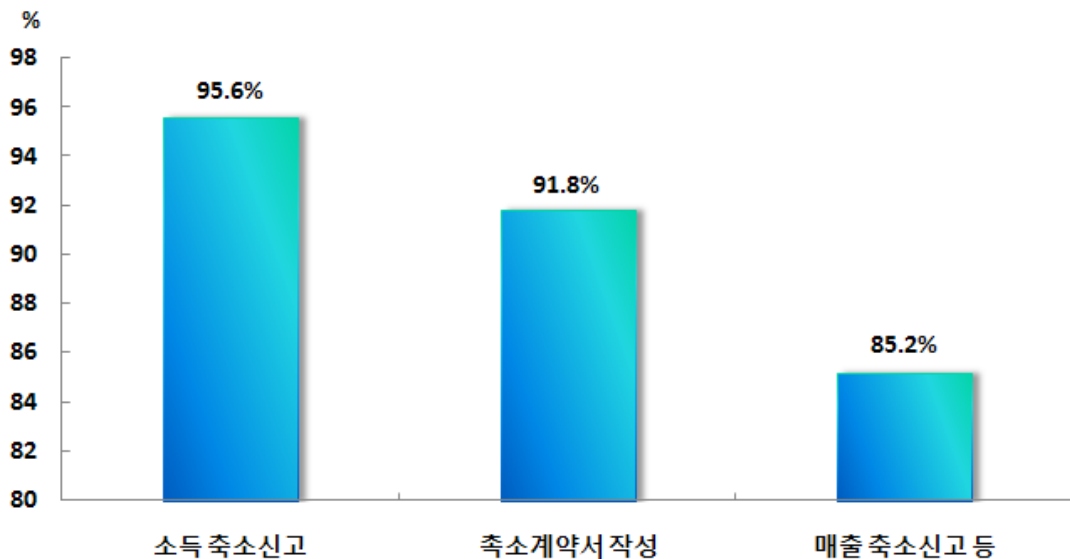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형태별로는 비자영업자보다는 자영업자가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축소계약서 작성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과거 3년간 매출 축소신고 및 비용 과다계상 여부) 매출 축소신고 및 비용 과다계상 신고를 경험한 유효 응답자<sup>3)</sup>가 14.8%나 되어, 상대적으로 앞의 두 가지 경우보다 납세순응행위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30대, 40대 및 60대 층에서, 고졸 이하 계층보다는 대졸 이상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매출 축소 및 비용 과세계상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I-4] 실제 납세순응행위도(유효응답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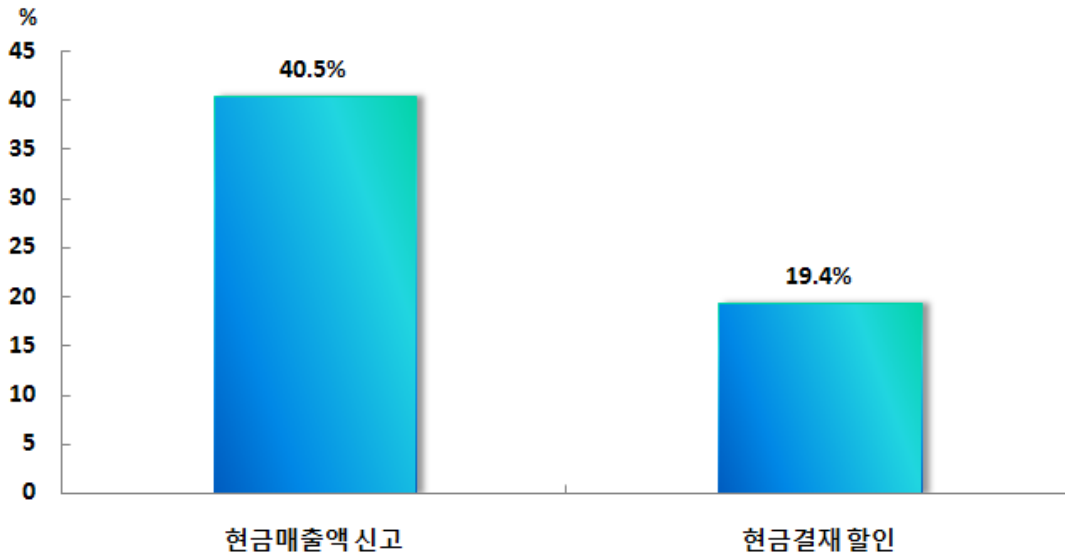


3) 지난 3년 기간 동안 사업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나타냄

## 나) 가상 납세순응행위

- (시나리오 1) 증빙자료가 없어 발각될 가능성이 없는 현금 매출액 1천만원에 대한 신고여부
  -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40.5%)가 '신고하겠다'라고 응답
  - 여성보다는 남성이, 수도권 거주자보다는 비수도권 거주자가, 타 근로형태보다는 자영업자 계층이, 무종교보다는 종교가 있는 계층이, 지난 1년간 복권구입 경험이 있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고하겠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시나리오 2) 현금 결제시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업주의 현금거래 제안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 응답자 10명 중 약 2명(19.4%)만이 '현금거래 유도는 업주의 세금회피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응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 여성보다는 남성이, 타 근로형태보다도 자영업자 계층이, 타 연령대보다 40대 및 50대 계층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금거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안에 응하겠다는 응답자는 36.7%, 5% 할인에는 응하지 않지만 10% 할인에는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응답자는 43.9%로 조사

[그림 III-5] 가상 납세순응행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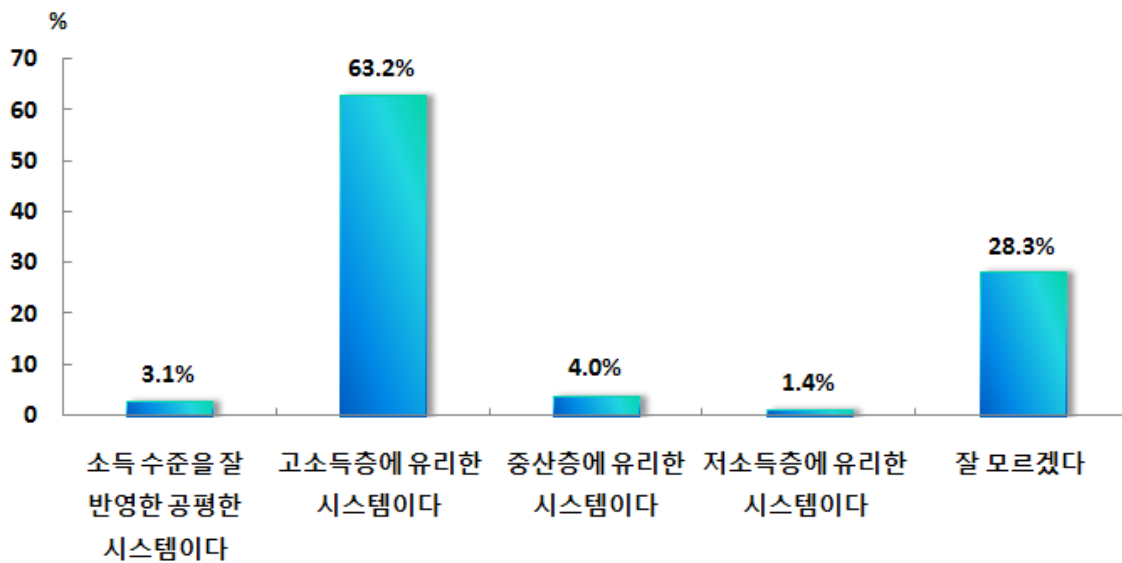


### 3) 조세형평도 지표

- 조세형평도 지표는 현행 조세제도의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평가 (horizontal equity)와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평가(vertical equity) 및 교환의 형평성(exchange equity)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생성
  
- (수직적 형평성) “현행 조세제도(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약 3.1%만이 현행 조세제도가 소득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라고 응답
  - 반면, 10명 중 6명(63.2%)정도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유형에서 현행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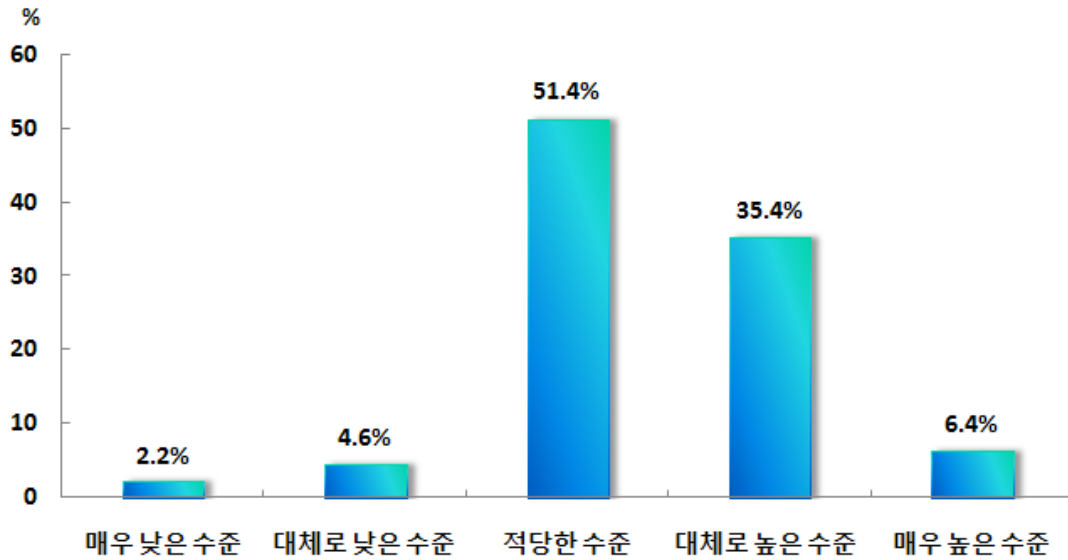
- 다만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중·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5.4%였고, 전체 응답자의 28.3%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

[그림 III-6]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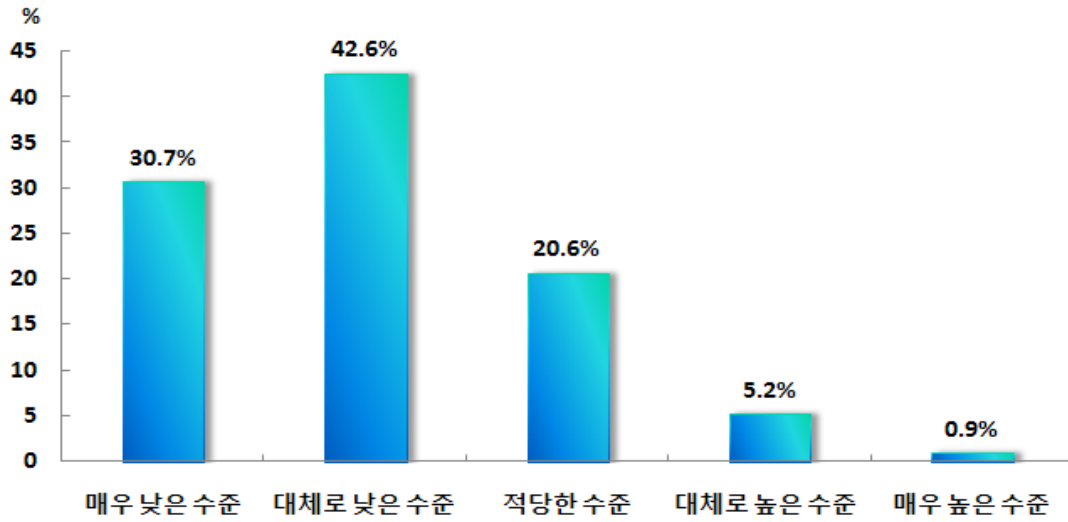
- (수평적 형평성) “본인의 소득과 비슷한 납세자 그룹과 비교하여 본인의 세부담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약 50.8%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
  - 반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약 41.3%로 조사
    - 응답자 유형별로는 40대,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계층, 사업주/자영업자 계층에서 세부담의 적정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냄
    - 또한 연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응답하여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그림 III-7]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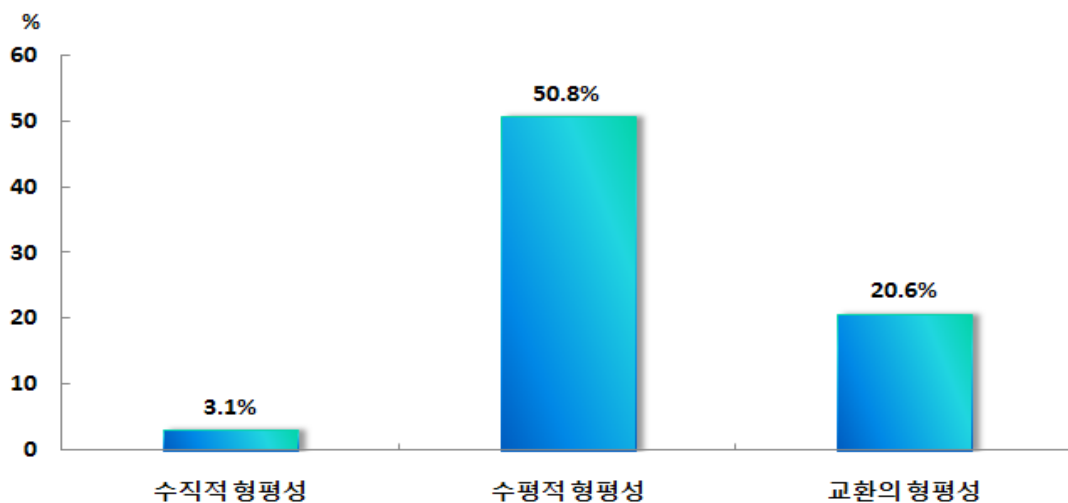
- (교환의 형평성)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약 7명(73.3%)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수준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인식

[그림 III-8] 교환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



- 조세제도 관련 3가지 형평성 중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적정하다”는 평가가 가장 낮고(3.1%), 다음으로 교환의 형평성(20.6%)이 낮게 평가
-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과반수(50.8%)가 “적정하다”고 평가

[그림 III-9] 조세 형평성별 “적정하다”는 평가 비율



#### 4) 조세이해도 지표

□ 조세이해도 지표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이해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세율 및 주택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금액에 대한 인지도 등으로 구성

□ (조세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 응답자의 34.9%가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1.4%,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33.5%)’고 응답

- 성별: 남성(40.5%)이 여성(29.9%)보다 주관적 조세이해도가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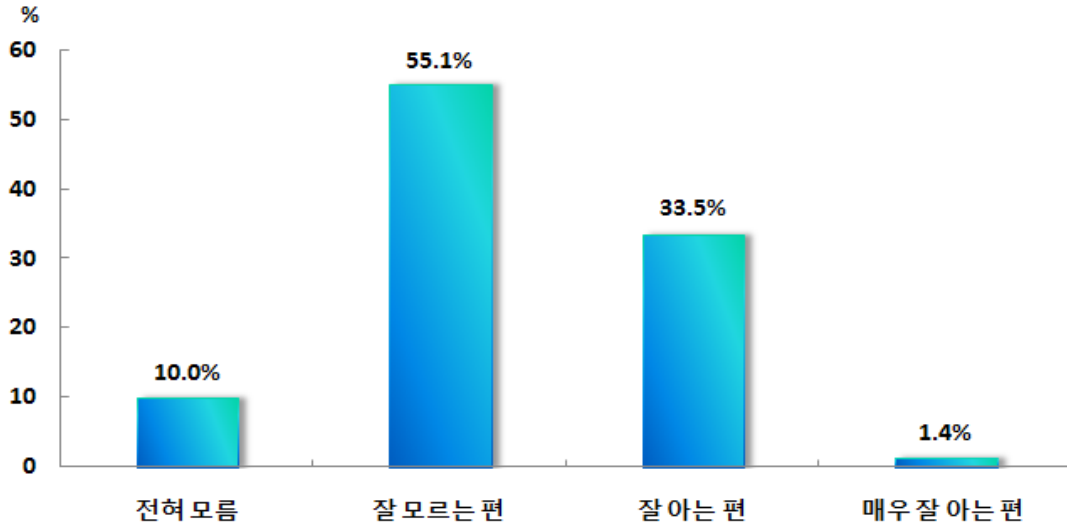
- 연령별: 60대의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을수록 세금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 근로형태별: 자영업자의 세금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49.4%), 임금근로자(36.8%)가 그 다음이었고, 무급가족종사자(23.5%)나 무직자 그룹(28.3%)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인지도를 스스로 낮게 평가

- 소득 및 교육수준: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 ‘모르겠다(전혀 모르고 있다: 10.0%,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55.1%)’라는 응답도 6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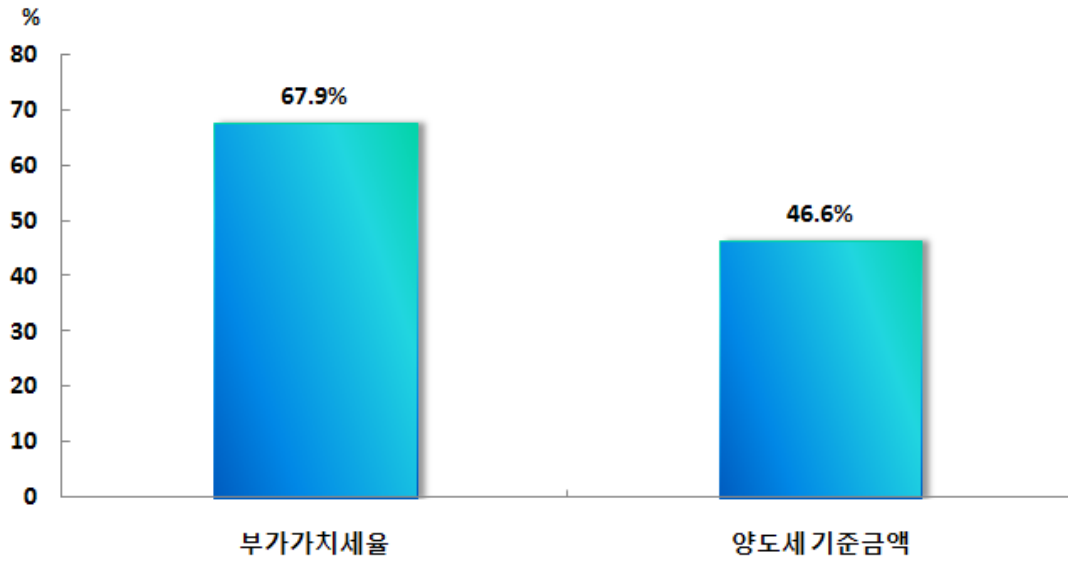
[그림 III-10] 주관적 조세이해도



□ (조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부가가치세 세율 및 주택 양도소득세의 고가 주택 기준금액은?”

- 부가가치세 세율: 전체 응답자의 약 2/3(67.9%)가 현행 부가가치세율이 10%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금액의 경우 약 46.6%만이 6억원으로 정확하게 응답
  - 성별 및 교육수준: 여성보다는 남성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의 정답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및 근로형태별: 수도권에 거주하는 계층과 자영업자 계층이 대응되는 타 계층보다 세금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 연령별: 연령별로는 부가가치세 세율의 경우 중간 연령대(30/40/50대)가 저연령대(20대)와 고연령대(60대)보다 정확하게 인지한 반면,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50대 및 60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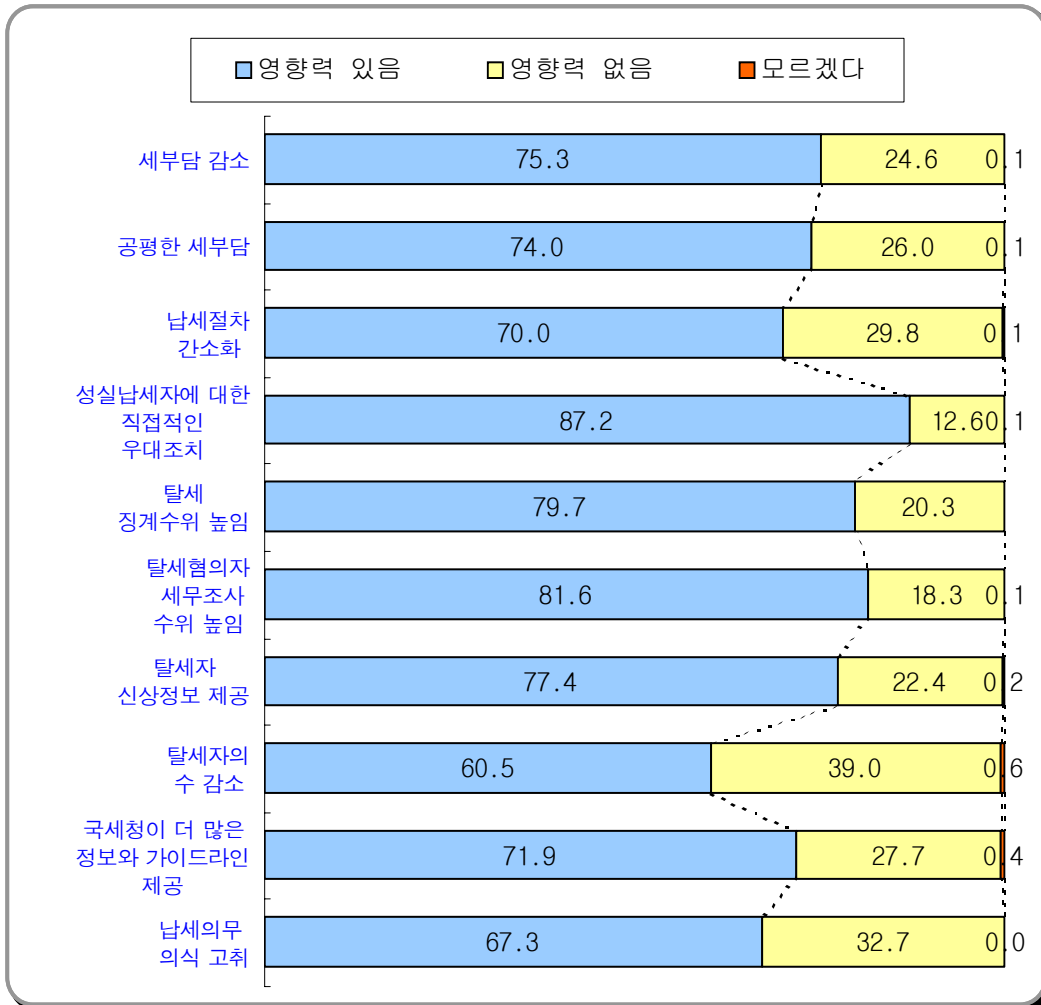
[그림 III-11] 객관적 조세이해도: 정확도



※ 성실납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실납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높게 평가
  - 성실납세에 대한 우대조치(87.2%)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 다음으로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수위 높임(81.6%), 탈세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임(79.7%)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그림 III-12] 성실납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평가



### 3. 납세의식 지표 생성

□ 개별 지표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 가. 주된 지표

□ (성실납부의향 지표) 100점 만점에 평균 67.2점으로, 3명 중 2명은 성실납부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납세순응행위 지표) 100점 만점에 평균 63.3점으로, 10명 중 6명은 납세순응행위를 하는 것으로 조사

○ (실제 납세순응행위) 과거 3년간 실제 납세 경험을 묻는 납세순응지수는 평균 96.7점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득 과다계상·매출 축소·축소계약서 작성 등의 납세비순응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성실납세의향 지표에 비하여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성실납부의향은 낮아도 실제 순응행위에서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이유로 수동적으로 순응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러한 해석은 다음의 추가적인 가상 상황에서의 납세순응행위 지표 조사에서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 (가상 납세순응행위) 자영업주로서 현금매출액 신고누락 및 상품구매 시 현금지불을 통한 할인 등과 같은 가상 상황에서의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에 비해 매우 낮은 30.0점으로 나타남

-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와의 큰 격차는 본 설문지에서의 가상순응행위 질문들이 탈세행위에 대한 발각이나 처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즉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소극적인 납세순응행위가 가상적 납세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아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임

- 많은 납세의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실제 납세순응행위 경험을 대체하는 변수로 가상 납세순응행위변수를 사용하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의 두 행위상 큰 격차(실제 vs 가상)는 이러한 분석들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음을 시사

#### 나. 보조 지표

□ (조세이해도 지표) 100점 만점에 평균 49.8점으로 나타남

□ (조세형평도 지표) 100점 만점에 평균 44.1점으로 조사됨

<표 III-4> 개별 지표의 기술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된 지표	성실납세의향	67.17	33.65	0.0	100.0
	납세순응행위	63.31	18.35	0.0	100.0
	- 실제순응행위	96.65	13.15	0.0	100.0
	- 가상순응행위	29.98	33.52	0.0	100.0
보조 지표	조세형평도	44.07	21.52	0.0	100.0
	조세이해도	49.84	34.11	0.0	100.0

□ 개별 지표들을 소득, 교육수준, 자영업자 여부 등 주요 인구특성 외생변수와 연계한 각 그룹별 개별 지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고소득자(4천만원 이상) vs 저소득자(4천만원 미만)
  - 고소득자는 전반적인 납세순응행위, 가상 납세순응행위, 조세이해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 저소득자는 성실납세의향, 실제 납세순응행위,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
  - 다만, 성실납세의향 및 전체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5% 유의수준하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고학력(대졸 이상) vs 저학력(고졸 이하)
  - 저학력자가 조세이해도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음
  - 조세이해도 지표의 경우 조세제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질문들<sup>4)</sup>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학력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에 대한 이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 가능
  - 다만, 납세순응행위 지표(실제 및 가상 포함)는 5% 유의수준하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 vs 비자영업자
  - 자영업자가 성실납세의향, 전반적 납세순응행위, 가상 납세순응행위, 조세이해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 비자영업자는 실제 납세순응행위,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
  - 다만, 전반적인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5% 유의수준하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 집단이 고소득 및 고학력 집단과 상관관계가 높은 점으로

---

4) 객관적 질문은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 주택 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금액에 관한 설문을 의미

미루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이해도는 자영업자의 높은 학력 수준 및 소득수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가능

→ 조세이해도가 실제 납세순응행위 여부로 연계되지 않음을 시사

- 유종교자 vs 무종교자
  - 유종교자가 성실납세의향·납세순응행위(가상 포함) 지표에서, 무종교자는 조세이행도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값을 가짐
- 복권구입 vs 복권 비구입
  - 복권구입 경험이 있는 자는 조세이행도 지표에서, 경험이 없는 자는 성실납세의향·납세순응행위(가상 포함)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값을 가짐

<표 III-5> 인구특성변수별 개별 지표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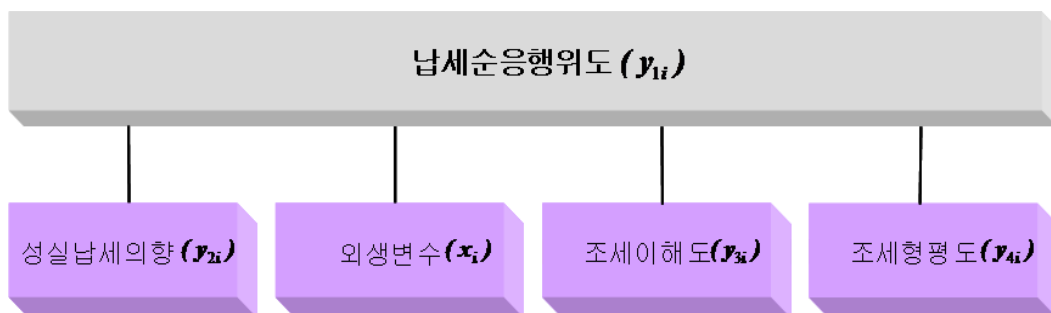
구분	주된 지표				보조 지표	
	성실 납세 의향	납세순응행위			조세 형평도	조세 이해도
		전체	실제	가상		
고소득(4천만원 이상)	64.4	64.7	93.1	<b>36.3</b>	40.0	<b>65.9</b>
저소득(4천만원 이하)	67.9	63.0	<b>97.5</b>	28.4	<b>45.1</b>	45.9
고학력(대졸 이상)	65.8	63.2	96.5	29.9	42.3	<b>54.5</b>
저학력(고졸 이하)	<b>68.6</b>	63.5	96.8	30.1	<b>46.1</b>	44.6
자영업자	<b>70.3</b>	64.5	89.0	<b>40.0</b>	41.0	<b>62.6</b>
비자영업자	66.6	63.1	<b>98.2</b>	28.0	<b>44.7</b>	47.3
유종교자	<b>68.8</b>	<b>63.8</b>	96.6	<b>31.1</b>	43.6	50.4
무종교자	64.9	62.6	96.8	28.3	44.8	49.1
복권구입 경험 있다	64.1	61.5	96.0	27.0	43.0	<b>52.7</b>
복권구입 경험 없다	<b>69.7</b>	<b>64.8</b>	97.2	<b>32.4</b>	44.9	47.5

주: 회색으로 칠해진 셀은 5%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

#### 4. 납세순응행위 실증분석

- 개별 지표들의 관계를 보다 입체화시켜 분석함으로써 납세의식의 고취 및 현실적인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특히, 납세순응행위여부가 주관적인 납세의향이나 조세이해도와 조세형평성에 대한 평가 및 기타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음
  - 인과관계를 보다 체계화시켜 다음과 같은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을 고려
    - $y_{1i} = f(y_{2i}, x_i, y_{3i}, y_{4i})$
    - \*  $y_{1i}$ 는 납세순응행위지수로 협의의 납세의식 또는 성실납세의향지수( $y_{2i}$ )와 조세이해도지수( $y_{3i}$ ), 조세형평도지수( $y_{4i}$ ) 및 기타 외부요인(예: 개인의 인구동학적 요인, 소득, 직업 등 외생변수  $x_i$ )에 의해 결정
    - \* 각종 지수는 주성분 분석 방법을 통해 생성

[그림 III-13]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구조도



□ 주성분 분석의 개요

- 주성분분석이란 다차원의 데이터가 존재할 때 정보손실의 최소화를 전제로 차원축소를 행하는 방법론으로, 다차원 변수의 변량을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이라 불리는 적은 수의 변수로 요약하는 기법
- 활용사례(D. J. McKenzie, J. Popul. Econ., 2005): 소득이나 소비수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특정 내구재들의 소유여부 및 주택특성 등 자산지표들(asset indicators)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런 자산지표들을 통해 자산지수(asset index)를 생성한 후 지역별 자산지수의 불평등도를 산출하여 생활수준 불평등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자산 불평등도의 활용 가능성 제시
- 기타사례: 가구의 부, 소득 등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다차원의 정보를 하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잠재변수로 묶어 가구원의 건강 등 특정 연구의 관심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활용

□ 위 모형을 선형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실제 납세순응행위 및 가상 납세순응행위 모두 성실납세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우 큰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납세순응행위에서보다 가상 납세순응행위에서 성실납세의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추정
- 성실납세의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세형평도지수는 예상한 바와 같이 실제 납세순응행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 반면 조세이해도지수는 예상과 달리 실제 납세순응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6>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구분	(1) 실제 납세순응행위	(2) 가상 납세순응행위
개인별 성실납세의향지수	0.0290 (0.0081)***	0.2755 (0.0194)***
개인별 조세이해도지수	-0.0378 (0.0081)***	0.0127 (0.0194)
개인별 조세형평도지수	0.0272 (0.0126)**	-0.0755 (0.0299)**
절편	0.9524 (0.0094)***	0.1232 (0.0223)***
R2	0.0182	0.0792
표본수	2,321	2,319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 조세이해도 및 조세형평성, 성실납세의향이 소득수준, 교육수준, 근로형태 등 외생변수를 통제 한 후에도 순응행위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
- 성실납세의향은 소득수준 등의 외생변수를 통제 한 후에도 조세이해도 및 조세형평도지수보다 순응행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순응행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납세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든, 처벌을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차원이든 간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향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실제 납세순응행위보다는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의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성실납세의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가상 납세순응행위에서는 적극적인 의향이 중요하나, 실제 납세

- 순응행위에서는 직업환경이나 소득수준 등 다른 외생변수의 영향이 성실납세의향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즉, 가상 납세순응행위에서는 주관적인 납세의향이 보다 명확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판단

- 조세이해도는 실제 납세순응행위에 통계적으로 미약하지만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조세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도가 납세순응행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즉,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오히려 조세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세금탈루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
  
- 조세형평도는 실제 납세순응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고, 가상 납세순응행위에 대해서는 예상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
  - 본 연구의 연구방식과 같은 설문조사를 통한 조세형평도에 대한 평가 자체에 상당한 수준의 측정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
  
- 소득수준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실제 납세순응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지닌 반면,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조사
  - 소득구간과 과세구간이 동일하여 소득구간이 한 단계 상승함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 세율이 올라가 실제적으로는 세율의 증가효과로 간주할 수 있음
  - 실제 납세순응행위지수는 과거의 탈세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생성된

것으로 소득구간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고 탈세의 상대가격이 변함

- 탈세의 상대가격을 반영하는 세율은 고소득 구간에서 더 크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고소득 구간에서 실제 탈세행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는 탈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이 이미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수준별 기대소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가 상이
  - 저소득층에게 탈세로 인한 기대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가상적인 상황에서는 탈세행위를 할 개연성이 더 커짐
  - 따라서 소득구간이 상승함에 따라 가상 납세순응행위는 낮아진 것으로 판단

□ 자영업자 여부는 다른 외생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가상 납세순응행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실제 납세순응행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영업자가 현실적으로 납세비순응행위를 유발하는 직업환경(예: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하는 등 잦은 세무신고 등)을 가진 것으로 해석 가능

□ 거주지역도 납세순응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측정

-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 순응행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이 많은 수도권에서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 가정한 탈세 및 조세회피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것으로 판단

- 위험선호도<sup>5)</sup>는 예상한 바와 같이 납세순응행위에 부정적인 효과를 지닌 것으로 추정
  - 특히 가상 납세순응행위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가졌지만 실제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주는 것으로 조사
  - 가상 납세상황에서는 납세순응행위 여부에 대한 응답이 보다 정직하게 이행될 확률이 높고, 실제 비용편익분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 선호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5) 설문조사 중 복권구입 성향으로 간접적으로 측정된 변수

<표 III-7>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외생변수 포함

구분		(1) 실제 납세순응행위	(2) 가상 납세순응행위
개인별 성실납세의향		0.0357 (0.0079)***	0.2658 (0.0192)***
개인별 조세이해도지수		-0.0154 (0.0085)*	-0.0089 (0.0207)
개인별 조세형평도지수		0.0142 (0.0122)	-0.0584 (0.0295)**
인 구 특 성 변 수	소득구간	-0.0086 (0.0040)**	0.0461 (0.0098)***
	학력구간	-0.0001 (0.0038)	-0.0156 (0.0093)*
	자영업자 여부	-0.0865 (0.0081)***	0.0461 (0.0197)**
	배우자 유무	0.0069 (0.0070)	-0.0127 (0.0170)
	성별	-0.0104 (0.0062)*	0.0474 (0.0150)***
	연령대	-0.0027 (0.0027)	0.0041 (0.0065)
	수도권 거주여부	0.0027 (0.0055)	-0.0413 (0.0134)***
	위험 선호도	-0.0010 (0.0048)	-0.0469 (0.0116)***
절편		0.9796 (0.0168)***	0.0962 (0.0409)**
Adj-R2		0.0925	0.1158
표본수		2,321	2,319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3. 위험 선호도는 복권 구입 빈도(정기적, 가끔, 전무)를 통해 측정함.

## IV. 결론 및 시사점

- 납세의식 수준은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널리 인식
  -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자발적인 납세순응도 제고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
  - 따라서 납세순응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납세의식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납세의식 수준의 개선이 납세순응행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식을 조세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총체적인 의식구조 및 가치관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주된 지표 및 보조 지표들을 통해 파악하였음
  - 주된 지표
    - 성실납세의향 지표: 협의의 납세의식 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 100점 만점에 평균 67.2점으로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 정도는 성실납세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납세순응행위 지표: 결과의 측면에서 납세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 100점 만점에 평균 63.3점으로 조사
      -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96.7점인 반면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30.0점으로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

- 보조 지표
  - 조세이해도 지표: 조세에 대한 주관적/개관적 이해도를 나타내는 지표  
→ 100점 만점에 평균 49.8로 측정
  - 조세형평성 지표: 조세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  
→ 100점 만점에 평균 44.1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낮게 측정
  
- 성실납세의향 지표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은 평균값을 가진 계층은 고소득, 고학력, 비자영업자, 무종교자, 위험선호자 및 30대와 40대, 남성인 것으로 파악
  - 봉급생활자의 성실납세의향이 낮은 것은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는 의견(15.4%)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
    - 이는 가상의 납세상황(현금매출액 보고여부 및 현금거래 동조여부) 속에서 30~40대 봉급생활자가 보인 높은 납세비순응행위도 설명해 줌
  - 따라서 고소득·고학력 및 30~40대의 남성 봉급생활자를 우선적으로 (협의의) 납세의식 향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
  
-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평균 약 97점으로 성실납세의향 지표보다 약 30점이 나 높게 조사된 것은 실제로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할 때 탈세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및 세원투명성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순응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이런 해석의 근거로는 탈세행위에 대한 발각이나 처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상의 납세상황을 설정한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의 점수가 겨우 30점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
    - 적발 및 처벌가능성과 세원 투명성의 이유로 행하는 실제 상황에서의

비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가 가상적인 납세상황 속에서는 납세비순응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이런 해석하에서는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세무조사의 비율 확대 및 처벌 강화가 성실납세의향이 낮은 계층의 정직한 세무보고 및 납세를 유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됨

- 40대, 고소득, 자영업자 계층이 동 지표의 전체 평균보다 낮은 평균값을 갖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 계층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

□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와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 간에 큰 격차는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분석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 제공

- 실제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연구에서 가상 상황에서의 납세순응행위 정보를 활용하여 수행한 분석들은 실제 납세순응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음을 시사

- 따라서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분석은 실제 상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국세청 및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거나, 기타 연구자들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

□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의 추정결과 소득수준·학력·근로형태 등의 외생변수를 통제하고도 성실납세의향은 납세순응행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확인

- 특히 실제 납세순응행위보다 가상 납세순응행위에서 성실납세의향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추정

- 이는 가상 납세순응행위에서는 주관적인 의향이 중요하나, 실제 납세순응행위에서는 직업 환경이나 소득수준 등 다른 외생변수의 영향이 성실납세의향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부 록

<부표>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 회귀분석: 단순평균 방식

구분	(1) 실제 납세순응행위	(2) 가상 납세순응행위	
성실납세의향 지표	0.0316 (0.0079)***	0.2787 (0.0199)***	
조세이해도 지표	-0.0147 (0.0084)*	-0.0154 (0.0209)	
조세형평도 지표	0.0187 (0.0124)	-0.0667 (0.0311)**	
인 구 특 성 변 수	소득구간	-0.9554 (0.3949)**	4.3955 (0.9882)***
	학력구간	0.1084 (0.3751)	-1.5272 (0.9385)
	자영업자 여부	-7.6190 (0.8018)***	5.4353 (2.0061)***
	배우자 유무	0.6327 (0.6911)	-1.4905 (1.7291)
	성별	-1.0469 (0.6088)*	4.5716 (1.5232)***
	연령대	-0.2815 (0.2644)	0.0017 (0.6615)
	수도권 거주여부	0.2908 (0.5425)	-4.4198 (1.3574)***
	위험 선호도	-0.1745 (0.4730)	-5.1694 (1.1834)***
절편	97.9523 (1.6738)***	13.2883 (4.0973)***	
Adj-R2	0.0859	0.1189	
표본수	2,339	2,339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